

第254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7號

國會事務處

2005年6月29日(水) 午後 2時 30分

議事日程

1. 刑法中改正法律案
2. 刑의失效等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 憲法裁判所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안
6. 치료감호법안(대안)
7.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8. 特定強力犯罪의處罰에關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9.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關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在外同胞의出入國과法的地位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12.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13.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關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5·18민주유공자예우에關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國家有功者等禮遇및지원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18. 음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9. 信託業法 일부개정법률안
20. 韓國産業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證券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
22. 先物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
2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4.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5. 公認會計士法 일부개정법률안
26. 所得稅法 일부개정법률안
27. 相續稅및贈與稅法 일부개정법률안
28.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國稅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
3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1. 特別消費稅法 일부개정법률안
32. 交通稅法 일부개정법률안
33. 教育稅法 일부개정법률안
34.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35.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

36.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
37. 地方財政法改正法律案
38. 地方交付稅法 일부개정법률안
39. 賞勳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새마을금고法 일부개정법률안
41. 大韓消防共濟會法中改正法律案
4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5. 請願警察法 一部改正法律案
46.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
47. 國民體育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8.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中小企業創業支援法 일부개정법률안
51.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
52.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5. 2005년도입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6.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57.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58.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附議된案件

1. 刑法中改正法律案(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이원영·김덕규·오제세·유선호·최재천·김원웅·황우여·이시중·정성호·김태홍·홍미영·우윤근·양승조·송영길·이은영·최용규·김태년·김동철·이상락·심재덕·원희룡·엄호성 의원 발의) 5
2. 刑의失效等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강혜숙·김낙순·신중식·양형일·엄동연·우제항·윤원호·이상경·이원영·이은영·정두언·정성호·주승용·최용규 의원 발의) 5
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4. 憲法裁判所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5
5.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최용규 의원 발의)(최용규 의원 외 150인 발의) 7
6. 치료감호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7
7.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7
8. 特定強力犯罪의處罰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7
9.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8
10.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8
12.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8
13.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고진화·오제세·이상득·안민석·박영선·최인기·양형일·유정복·김재홍·김교홍·강혜숙·박재완·조일

현 · 엄호성 · 노웅래 · 노현송 · 이해봉 · 문학진 · 조배숙 · 안상수 · 이근식 · 정병국 · 최재천 · 이원영 · 이혜훈 · 제종길 · 김태년 · 신중식 · 김한길 · 유필우 · 서재관 · 우제창 · 윤호중 의원 발의)	10
1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 · 신중식 · 정봉주 · 조일현 · 김한길 · 서재관 · 유선호 · 이윤성 · 허태열 · 정성호 · 안상수 · 김태홍 · 이규택 · 정병국 · 황우여 · 김낙순 · 김재경 · 오제세 · 노현송 · 이근식 의원 발의)	10
15.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10
16.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10
17. 國家有功者等禮遇지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18.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0
19. 信託業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 · 이상민 · 엄호성 · 윤호중 · 우제창 · 조정식 · 김교홍 · 김태년 · 강길부 · 이호웅 · 오제세 · 김현미 · 정성호 의원 발의)	15
20. 韓國産業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6
21. 證券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 · 박재완 · 서갑원 · 오영식 · 이상민 · 이호웅 · 김부겸 · 이근식 · 선병렬 · 제종길 · 이시중 · 엄호성 · 이명규 · 서혜석 · 박찬석 · 이목희 · 노영민 · 이화영 · 원혜영 · 주승용 · 장경수 · 이혜훈 · 신국환 의원 발의)	16
22. 先物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 · 박재완 · 서갑원 · 오영식 · 이상민 · 이호웅 · 김부겸 · 이근식 · 선병렬 · 제종길 · 이시중 · 엄호성 · 이명규 · 서혜석 · 박찬석 · 이목희 · 노영민 · 이화영 · 원혜영 · 주승용 · 장경수 · 이혜훈 · 신국환 의원 발의)	16
2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 · 박재완 · 서갑원 · 오영식 · 이상민 · 이호웅 · 김부겸 · 이근식 · 선병렬 · 제종길 · 이시중 · 엄호성 · 이명규 · 서혜석 · 박찬석 · 이목희 · 노영민 · 이화영 · 원혜영 · 주승용 · 장경수 · 이혜훈 · 신국환 의원 발의)	16
24.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계안 의원 대표발의)(이계안 · 박영선 · 김현미 · 이근식 · 염동연 · 김기석 · 전병헌 · 이목희 · 조일현 · 송영길 · 이상경 · 문학진 · 김영춘 의원 발의)	16
25. 公認會計士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6
11. 在外同胞의出入國과法的地位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발의)(홍준표 의원 외 116인 발의)	18
○ 의원신상발언	19
26. 所得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27. 相續稅및贈與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28.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21
29. 國稅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 · 강혜숙 · 고진화 · 김덕규 · 김명자 · 김부겸 · 김양수 · 김영춘 · 김재경 · 김진표 · 김태홍 · 김한길 · 서갑원 · 서재관 · 서혜석 · 안병엽 · 안상수 · 엄호성 · 윤호중 · 이계안 · 이근식 · 이낙연 · 이시중 · 이인기 · 이해봉 · 장경수 의원 발의)	21
3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 · 강혜숙 · 고진화 · 김덕규 · 김명자 · 김부겸 · 김양수 · 김영춘 · 김재경 · 김진표 · 김태홍 · 김한길 · 서갑원 · 서재관 · 서혜석 · 안병엽 · 안상수 · 엄호성 · 윤호중 · 이계안 · 이근식 · 이낙연 · 이시중 · 이인기 · 이해봉 · 장경수 의원 발의)	21
31. 特別消費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32. 交通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33. 教育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34.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25
35.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정부 제출)	26
36.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정부 제출)	26
37. 地方財政法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6
38. 地方交付稅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6
39. 賞勳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9
40. 새마을금고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9
41. 大韓消防共濟會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9
4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 · 이인기 · 최규식 · 서재관 · 제종길 · 노현송 · 조성래 · 원혜영 · 강창일 · 안병엽 · 우제항 · 우제창 · 양형일 · 정의용 · 심재 덕 의원 발의)	32
43.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현송 의원 대표발의)(노현송 · 강창 일 · 강혜숙 · 구논희 · 김명자 · 김성곤 · 김재경 · 김재홍 · 문학진 · 박기춘 · 박상돈 · 박재완 · 서재관 · 신기남 · 신중식 · 심재덕 · 양형일 · 엄호성 · 오제세 · 우원식 · 우제창 · 우제항 · 원혜 영 · 유인태 · 유필우 · 이계경 · 이낙연 · 이시중 · 이원영 · 이윤성 · 전병현 · 정청래 · 조성래 · 조일현 · 최규식 · 홍미영 의원 발의)	32
44.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현송 의원 대표발의)(노현송 · 강창일 · 구논희 · 김낙순 · 김명자 · 김재경 · 김재홍 · 김태홍 · 박기춘 · 박상돈 · 박재완 · 서재관 · 송영길 · 신국환 · 신기 남 · 심재덕 · 안병엽 · 양형일 · 엄호성 · 오제세 · 우원식 · 우제창 · 우제항 · 원혜영 · 유필우 · 이계경 · 이근식 · 이낙연 · 이시중 · 이원영 · 이윤성 · 이해봉 · 조성래 · 조일현 · 최규식 · 홍미 영 의원 발의)	32
45. 請願警察法 一部改正法律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강봉균 · 김우남 · 김재경 · 김재윤 · 김재홍 · 김종률 · 김태홍 · 김혁규 · 김희정 · 노현송 · 박계동 · 박기춘 · 박세환 · 신중식 · 양형 일 · 유정복 · 이계안 · 이호웅 · 최인기 · 최철국 · 허천 의원 발의)	33
46.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 · 백원우 · 이원영 · 이용희 · 임종석 · 지병문 · 유기홍 · 구논희 · 장향숙 · 박기춘 · 우제항 의원 발의)	33
47. 國民體育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34
48. 體育施設의 설치 · 이용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34
49.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35
50. 中小企業創業支援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 · 김교홍 · 김용갑 · 김태홍 · 김형주 · 문학진 · 박순자 · 배기선 · 안경률 · 오영식 · 유기홍 · 이광재 · 이광철 · 이미경 · 이영 호 · 이원영 · 장경수 · 정봉주 · 최규성 · 최재성 · 한병도 의원 발의)	35
51.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서갑원 의원 발의)(서갑원 의원 외 150인 발의)	35
52. 벤처企業育成에 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35
5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주 의원 대표발의)(김형주 · 제종길 · 조정식 · 우원 식 · 배일도 · 문학진 · 전병현 · 이해봉 · 정봉주 · 구논희 · 노현송 · 최철국 · 최성 의원 발의)	37
54.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 · 김재경 · 이윤성 · 권오을 · 이해봉 · 고진화 · 전여옥 · 고경화 · 박재완 · 김애실 · 맹형규 · 조경태 · 최재성 · 정병국 · 문학진 · 유승민 · 신중식 · 서혜석 · 엄호성 · 임태 희 · 배일도 · 이인기 · 유정복 · 이계진 · 이주호 의원 발의)	38
55. 2005년도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정부 제출)	39
56.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39
57.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39
58.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43
○ 5분자유발언	44

(15시13분 개의)

○의장 김원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노재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원기 방금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강재섭 의원 등 124인으로부터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윤광웅)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법률안 중에 심사보고서 등을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않은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93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으로 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刑法中改正法律案(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이원영·김덕규·오제세·유선호·최재천·김원용·황우여·이시중·정성호·김태홍·홍미영·우윤근·양승조·송영길·이은영·최용규·김태년·김동철·이상락·심재덕·원희룡·엄호성 의원 발의)

2. 刑의失効等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강혜숙·김낙순·신중식·양형일·염동연·우제항·윤원호·이상경·이원영·이은영·정두연·정성호·주승용·최용규 의원 발의)

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憲法裁判所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5시19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항 형법중개정법률

안, 의사일정 제2항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우윤근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우윤근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광양시·구례군 출신의 우윤근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 동시적 경합범에 비하여 과중한 형을 선고받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형을 포함한 전체형을 정하고 전체형에서 기존형을 공제한 추가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은 실무상 혼란이 우려되므로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현행법이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죄를 범한 시기와 관계없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범죄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로 한정하는 개정안은 판결 이후에 재범방지라는 집행유예의 목적과 부합하므로 이를 수용하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집행유예 결격사유기간의 기산점을 형의 선고 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형의 확정 시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한 적용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안에서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와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부분은 그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수용하기로 하되 관련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이나 서훈·표창 등의 결격사유, 공무원 연금 지급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그 조회와 회보가 가능토록 일부 내용을 추가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모든 수사경력자료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국민의 인권신장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나 해당 수사경력자료를 양형자료로 활용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범죄사실의 법정형을 10년 이상, 2년 이상 및 2년 미만으로 세분하고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상이하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사무소 및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에 대한 설치근거를 두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이들 기구의 설치근거를 굳이 법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조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수용하되 새로운 조정제도 운영 과정에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과 선임절차의 통일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엄격한 검증절차를 통하여 공직수행에 적합한 재판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가 선출하지 않은 6인의 재판관도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하고 법률에 인사청문요청권자 및 그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책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에도 그 결정문에 재판관이 반드시 의견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하는 심판은 모두 결정문에 관여 재판관이 의견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1건과 심사보고 3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刑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刑의失效等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憲法裁判所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형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8인 중 찬성 248인으로서 형법중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50인 중 찬성 249인, 반대 1인으로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52인 중 찬성 209인, 반대 31인, 기권 12인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53인 중 찬성 229인, 반대 19인, 기권 5

인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최용규 의원 발의)(최용규 의원 외 150인 발의)

6. 치료감호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7.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8. 特定強力犯罪의處罰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5시29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5항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치료감호법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용규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최용규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부평구를 출신의 최용규 의원입니다.

사회보호법 폐지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현행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제도 등이 피감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실태도 구금 위주의 형벌과 다름없이 시행되고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사회보호법 자체도 지난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사회방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위험한 전과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감호처분에 치중하고 있어서 이를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사회보호법은 폐지하고 동법 중 치료감호제도에 관하여는 새로 제정되는 치료감호법안(대안)을 통하여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이미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기로 하는 경과규정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대의견으로, 정부로 하여금 관련 기준 완화 등 집행의 탄력성을 통하여 가출소 또는 집행면제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채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치료감호법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치료보호법안, 또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토대로 하나의 단일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폐지되는 사회보호법에 따라 규율되어 온 치료감호 제도를 보완·개선하여 유지할 목적으로 제정되는 법률로서 심신장애 또는 마약류·알코올 등의 중독·습벽 상태에서 범죄를 행한 자를 감호·치료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 외에 치료의 필요성을 명문화하여 치료감호 선고요건을 강화하고,

둘째,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발견되었음에도 치료감호 청구가 불가능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등의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치료감호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며,

셋째, 치료감호 기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정기형을 폐지하고 15년을 상한으로 하되 약물중독범의 경우는 실무상 그 치료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최장 2년 이내로 그 기간을 제한하고,

넷째, 피치료감호자의 치료 및 교육 효과를 높이고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처우와 권리에 관한 조문들을 마련하여 별도의 장(章)을 신설하며,

다섯째, 치료감호의 가종료 등은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되 의학적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신과 전문의의 숫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양 법안은 사회보호법의 폐지에 따른 보완입법으로서 보호감호 청구의 주요 대상이 되었던 상습절도 사범이나 성폭력 사범 등에 대한 강력한 형사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습절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동종의 죄를 범한 때에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2배까지 가중한다는 것이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법의 강간·추행의 죄 등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가 다시 동종의 범죄를 범한 경우를 이 법의 규율 대상인 특정강력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부대의견으로 법원으로 하여금 양형을 보다 현실화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1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치료감호법안(대안)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特定強力犯罪의處罰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12인, 기권 6인으로서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치료감호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6인 중 찬성 241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치료감호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5인 중 찬성 24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52인 중 찬성 252인으로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제11항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에 따라 상정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9.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0.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2.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5시42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9항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항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김재경**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진주를 출신 김재경 의원입니다.

먼저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과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건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패방지라는 소극적인 목표보다 국가청렴도 제고라는 적극적 목표 지향을 위해서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고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고,

둘째, 부패행위를 강요·제의·권고·유인하거나 그 은혜를 강요하는 등의 간접적인 부패행위도 부패행위의 개념에 포함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 대상뿐만 아니라 신고자 보호범위도 확대하고,

셋째, 부패 취약 분야의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당해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을 두며,

다섯째,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는 신고의 중요내용이 직무 또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여섯째, 부패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보상금 지급신청 시점을 단축하고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비용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토대로 하나의 단일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범죄로부터 유래한 불법수익을 몰수·추징하고, 이를 가장·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 법의 적용대상 범죄를 확장하는 내용으로서 사기·횡령죄 등을 범하여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와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건강상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한 범죄 등도 이 법의 규율 대상인 중대 범죄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은영 의원이 발의한 불법정치자금등국고환수특별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대신에 형법상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치인 및 그가 가입한 정당이 불법으로 정치자금 또는 뇌물을 수수하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외에 불법으로 수령한 정치자금 또는 뇌물에 대하여는 현행 법 체계하에서 몰수 또는 추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정치자금 또는 뇌물을 효과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형법에 대한 특례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고비용·저효율의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선거직 공무원이 범한 형법의 뇌물죄 및 알선수재죄 등을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을 철저히 몰수하기 위하여 당해 범죄로 직접 얻은 불법정치자금 외에 불법

정치자금에서 유래한 재산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제3자가 범죄 후에 그 정을 알면서 불법 정치자금 및 불법정치자금에서 유래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제3자가 정당한 경우에는 정당 대표자, 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그 정을 알았을 때에 정당이 안 것으로 간주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몰수·추징을 피하기 위한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기소를 하기 전 또는 기소를 한 후에 감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법원이 몰수·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법제사범위원장)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7인, 기권 3인으로서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5인, 기권 1인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1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전

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고진화·오제세·이상득·안민석·박영선·최인기·양형일·유정복·김재홍·김교홍·강혜숙·박재완·조일현·엄호성·노웅래·노현송·이해봉·문학진·조배숙·안상수·이근식·정병국·최재천·이원영·이혜훈·제종길·김태년·신중식·김한길·유필우·서재관·우제창·윤호중 의원 발의)

1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신중식·정봉주·조일현·김한길·서재관·유선호·이윤성·허태열·정성호·안상수·김태홍·이규택·정병국·황우여·김낙순·김재경·오제세·노현송·이근식 의원 발의)

15.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정무위원장 제출)

16.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17. 國家有功者等禮遇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정부 제출)

18. 음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15시54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3항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14항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음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전병헌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전병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34인으로부터 발의된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본 의원 등 19인으로부터 발의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각각 제안된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부터 각각 제출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활동한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함으로써 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우리 국민과 후손들의 귀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단체가 단체의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공유 재산 및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분들로 구성된 국가유공자단체의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들 법률은 가산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동일한 내용의 가산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가산점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지 아니하면 법 적용의 형평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들 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동 개정안은 가산점에 의하여 합격하는 국가유공자의 상한선을 채용 인원의 30%로 설정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가유공자의 우선적 근로 기회와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 내지 직업 선택의 자유 사이에 조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음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정기관 등에 의한 국민의 권익 침해의 구제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강화하고자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행정음부즈만으로 확대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음부즈만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국가기관명에 ‘음부즈만’이라는 생소한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음부즈만’을 ‘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법 제명을 ‘음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보고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정무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장)

國家有功者等禮遇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음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정무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7인 중 찬성 236인, 기권 1인으로서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0인 중 찬성 229인, 반대 9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4인 중 찬성, 242인, 기권 2인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8인 중 찬성 243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8인 중 찬성 247인, 기권 1인으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읍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의 이승희 의원입니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제가 반대토론에 나선 발음도 어려운 이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발음 때문인지 이 자리에서 법률안의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확대 개편해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는 법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어처구니없는 일은 정부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서인지 4월 14일 정무직으로 승격 예정인 사무처장을 미리 임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의회 무시이며, 또 의회주의에 대한 모욕입니다. 9월 출발이라는 타임 스케줄을 짜 놓은 정부의 시간표에 국회도 발을 잘 맞추어 쥐서 법사위는 어젯밤 급히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여기에 계신 특정 정당의 동료 의원 여러분들을 거수기로 전략시키는 유신시대적 방식이 아직도 살아서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반대토론에 나왔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 여당 의원은 거수기가 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국회는 아직도 통법부입니까?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본 의원과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발의한 2개의 법안, 즉 읍부즈만의 정신을 살려서 의회에 읍부즈만 기구를 두는 법

안이 제출된 상태였지만 그 법안은 개혁특위나 운영위 등을 옮겨 다니면서 아직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은 상임위도 아닌 특위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아직 논의도 안 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여당이 밀어붙여서 일사천리로 진행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를 정책국회로 선언하고 개원 첫날 첫 번째 행사로 존경하는 유기준 의원과 제가 입법 발의한 의회형 옴부즈만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그 자리에는 존경하는 박근혜 대표와 강재섭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하여 의회주의 옴부즈만제도의 정당성과 의회 관철 의지를 대외에 표명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과 판단은 올바른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기초 위에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반대 물표를 던져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간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대통령 소속 기구로 옴부즈만 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해서 반대되어야 합니다.

첫째, 모든 행정행위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문서로 행해집니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잘못된 점을 밝혀 내고 시정해 가는 기구로서는 감사원이라는 강력한 기구가 이미 행정부 내에 대통령 소속 기구로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법과 규정이 모호한 행정재량행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민원이나 피해사항을 구제하는 데 또 다른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그간 수십 년의 행정 경험이 부질없는 시도라는 것을 다시 증명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행정부 내의 자정기능이 작동된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주요한 역할로 담당하고 있는 의회가 이 기능을 가져야 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현역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내각책임제적 성격이 강한 헌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겸임 장관들이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여기에 와 계실 것입니다.

학자들의 주장이나 국제적 사례들을 거명하지 않아도 의원내각제적인 성격의 국가는 의회 중심의 행정구제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셋째, 지금 이 법률안의 통과 시도는 참여정부의 정치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노무현 대통령뿐 아니라 열린우리당은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또 의회 중심의 정치를 선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 또 다른 대통령 직속기구를 이렇게 무리를 해 가면서 급하게 만들려고 합니까? 이는 존경하는 열린우리당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정치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는 의정활동의 제일의 목표를 삼권분립에 입각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넘겨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정행위가 실질적 운영 면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또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의회에서 법률적 차원의 재검토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할 때 비대해될 수밖에 없는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여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논리에서 첫 번째 시도로 국민의 소리를 제도적으로 수렴하여 입법활동이나 행정부에 대한 권고 등의 행위가 가능케 하는 기초가 되는 의회 내에 설치되는 국민옴부즈만제도를 발의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는 저 개인이나 특정 정파의 이해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키고 또 국민에 대한 봉사를 위한 작은 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변변한 의견 조율 한 번 없이 이런 식으로 법안이 폐기되고 또 구시대적 발상으로 의회가 무시되고 또 행정부 우위의 법안이 추진되고 통과된다는 것은 저지시켜야 합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의회를 우습게 보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맙시다. 행정부와 대통령의 의회 무시를 더 이상 허용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기 다음은 문학진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진 의원 지금 정무위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새천년민주당 이승희 의원님 말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새천년민주당이 민주당으로 바뀌었지요. 죄송합니다.

말씀 아주 잘 들었는데, 이것이 유신적 발상에

서 나온 법안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국회를 가리켜서 통법부로 전락하고자 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되어서 지금까지 정무위원회, 그리고 법사위원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94년도에 정부합동민원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난 10년간 활동하면서 제기되어 온 비상임 위원장 체제 또 파견인력의 과다, 자체 조사관 부족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 혁신의 차원에서 제출된 순수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개편안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운영되어 온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보다 실효성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또 행정 혁신의 차원에서 국민고충처리위를 보다 발전된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법률안으로 국민의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서 한시바빠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자는 이승희 의원님 또 유기준 의원님께서 발의한 입법안이 지금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충처리위를 국회 소속으로 설치하자고 하는 이 발상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로 정부조직의 개편과는 별개로 장기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것이 성격상 단시일 내에 처리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기준 의원과 이승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지금 운영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부조직개편안이, 지금 정부에서 제출한 이 개편안이 무한정 계류되는 것은 국민 권익구제를 하고자 하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기본취지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고충위가 대통령 소속으로 될 경우에 대통령의 정치적 권한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일반 행정기관과는 차별된 위상을 확보해서 국민의 권익구제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닙니다.

고충처리위가 국민 권익구제를 위해서 권고를 통해서 행정의 자기시정을 유도하는 기관이지 권

력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으로 고충처리위가 간다고 해서 대통령의 정치적 권한이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국회에 이관하자는 두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로, 혹 장기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관한다고 하더라도 행정부로 제기되는 고충민원의 수요 해결을 위해서 별도로 또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제도개선의 차원에서도 법률보다는 대통령령이나 지침 등 행정입법에 대한 제도개선 수요가 많기 때문에 행정부 소속으로 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경우에도 옴부즈만, 국민고충처리위 이런 기구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국회 소속으로 하고 있는 것이 다수의 경우이고, 대통령책임제 국가에서는 행정부 소속으로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아무쪼록 정무위에서 심도 있게 장시간 토론해서 본회의에 넘긴 이 법안을 우리 의원님들이 당을 가리지 말고 국민 권익구제 차원에서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기 다음은 유기준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산 서구 출신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입니다.

오늘 제출된 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승희 의원님께서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반복을 피하고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국가옴부즈만으로 그 명칭을 과대포장 변경하고 그 내용을 확대·개편하면서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법안이 정무위 및 법사위를 무사통과한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 먼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제목을 가진, 또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본 의원 및 존경하는 이승희 의원님께서 제출한 법안이 있고, 이 법안의 제출 시기는 오늘 제출된 법안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이승희 의원

이 제출한 법안은 그동안 국회 조직 관련 법안이라는 이유로 운영위에 먼저 가 있다가 또 국회개혁특위로 가 있다가 지금은 다시 국회운영위로 오는 등 정처 없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취급이 이렇게 달리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 법을 제출할 때부터 여당 및 정부에서 이 법에 대한 로드맵을 짜고 언제까지 이 법을 강행 처리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옴브즈만은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권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옴브즈만제도의 근본 정신과 취지를 고려할 때 옴브즈만을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는 것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신이 잘못된 것을 자신이 처리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취지에서 행정에 대한 견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의회 소속으로 옴브즈만제도를 두겠다는 것이 본 의원 및 이승희 의원이 제안한 법안인데, 그 법안은 지금 현재 손도 대지 않고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는 시간도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이 낸 또는 정부가 낸 법안은 시간을 두지 않고 바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야당이 제출한 법안은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되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위에 계류된 경위 또 국회개혁특위에 계류된 경위가 먼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져야 되고, 그 이면에 만일에 어떤 음모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제출한 법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정부의 행정 기능이 날로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한 행정 재량권의 확대 및 남용 그리고 소극적인 법 집행으로 인해 국민의 편익이 감소하고 불편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등 국가기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구제수단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행정의 부정적인 면을 통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회 옴브즈만을 도입하여 공직자와 행정기관의 법 집행의 해태 및 권력 남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통제와 구제수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

리 침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과 국민과 의회의 견제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 법안의 주요 취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학진 의원께서 현재 행정부에 옴브즈만을 두는 것이 선진국의 예고, 그렇지 않은 것이 후진국의 예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의회에 옴브즈만을 두는 것이 선진국과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들의 대부분의 경우이고, 후진·제3세계는 행정부에 이런 옴브즈만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지 가이나나 탄자니아와 같은 국가들이 행정부에 옴브즈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같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비슷한 시기에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 2개 법안은 오늘 처리하지 않고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만을 다룬다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들에게 무엇으로써 변명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국회의 원래 기능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인데 결국은 통법부 기능을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대 표결을 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에게 당부드리고, 또 이 법안이 다른 법안과 함께 토의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기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9인 중 찬성 133인, 반대 112인, 기권 4인으로서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信託業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이상민·엄호성·윤호중·우제창·조정식·김교홍·김태년·강길부·이호웅·오제세·김현미·정성호 의원 발의)

20. 韓國産業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21. 證券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박재완·서갑원·오영식·이상민·이호웅·김부겸·이근식·선병렬·제종길·이시종·엄호성·이명규·서혜석·박찬석·이목희·노영민·이화영·원혜영·주승용·장경수·이혜훈·신국환 의원 발의)

22. 先物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박재완·서갑원·오영식·이상민·이호웅·김부겸·이근식·선병렬·제종길·이시종·엄호성·이명규·서혜석·박찬석·이목희·노영민·이화영·원혜영·주승용·장경수·이혜훈·신국환 의원 발의)

2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박재완·서갑원·오영식·이상민·이호웅·김부겸·이근식·선병렬·제종길·이시종·엄호성·이명규·서혜석·박찬석·이목희·노영민·이화영·원혜영·주승용·장경수·이혜훈·신국환 의원 발의)

24.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계안 의원 대표발의)(이계안·박영선·김현미·이근식·염동연·김기석·전병헌·이목희·조일현·송영길·이상경·문학진·김영춘 의원 발의)

25. 公認會計士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6시27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9항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1항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최경환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최경환 존경하는 국회의

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경산·청도 출신 한나라당 소속 재정경제위원회 최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안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등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신탁업을 겸영하는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에 대하여도 은행과 동일하게 신탁회사의 상호사용, 고유자금의 운용제한 등 신탁업법 일부 조항을 개정안과 같이 적용 배제하도록 하였으나, 준비금의 적립책임을 가중하고 있는 법 제21조는 증권거래법 및 보험업법에 별도규정이 없음을 감안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이 개정안은 유승민 의원과 김정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한 것으로서 한국산업은행의 결산상 순이익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첫째,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의 100분의 4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였고,

둘째, 잔여이익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되, 이사회에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이익금은 출자자에게 배당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배당은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현물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면, 개정안과 같이 부적격자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의 주식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설립 시의 주요 출자자 요건을 갖추어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제한하며, 금감위가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WTO 협정의 위배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설립 시의 주요 출자자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감위의 승인 없는 주식취득 및 금감위의 처분 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계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기관 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 지난 1997년 이후 국내 부실채권시장을 주도하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습득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외 구조조정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동북아 구조조정시장을 선점하게 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수용하되, 고위험의 해외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로 인한 손실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되므로 이러한 위험을 회피할 방안으로서 국외 부실자산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접투자 대신 국외 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등을 통하여 투자하도록 하고, 출자 및 투자총액, 연간 투자총액, 회사 등에 대한 출자 및 투자한도, 위험관리체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동 개정안은 이계안 의원이 소개한 청원의 취지를 수용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으로서, 현행법상 개별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제척기간은 3년이나, 회계법인의 징계제척기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법무법인, 노무법인 등의 입법례와 같이 회계법인의 경우에도 개별 공인회계사의 징계제척기간 3년을 준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信託業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 韓國産業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위원장)
- 證券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先物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公認會計士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위원장)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5인 중 찬성 235인으로서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6인 중 찬성 236인으로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2인 중 찬성 237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39인, 반대 6인, 기권 1인
으로서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
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38인, 반대 6인, 기권 2인
으로서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
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197인, 반대 41인, 기권 9
인으로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
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4인, 기권 3인으로서 공
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
마는 앞에서 상정을 보류한 의사일정 제11항 재
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을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발의)(홍준표 의
원 외 116인 발의)

(16시42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1항 재외동포의출입
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김재경 존경하는 국회의
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재경 의원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
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2005년 5
월 24일 공포 시행된 국적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
하여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
한 상태에서 출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18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때에는 이 법의 보
호 대상인 재외동포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
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의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개정 법
률 부칙에 ‘국적이탈자에 대한 경과조치’라는 제
명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본칙 중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거부사유 규정에서 개
정안의 내용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법문의 위치 및 표현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在外同胞의出入國과法的地位에관한法律 일부개
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
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에
대해서 채수찬 의원의 토론 신청이 있는데
요. 채수찬 의원의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신청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한 이

11. 在外同胞의出入國과法的地位에관한法律 일

후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종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반대토론하겠습니다.)

(○김부겸 의원 단하에서 -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냥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야 합의로 토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임종인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내용이 문제가 많아서 그 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조용하세요.

그동안에 회의가 차질이 생겼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당 간에 합의가 된 줄 알았더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임종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토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104인, 반대 60인, 기권 68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원신상발언

(16시51분)

○의장 김원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신상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 어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한나라당 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서 저에게 '5일간의 국회 출석정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가장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죄를 크게 지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국회 역사상 최악의 국회의원

인지, 저를 징계한 국회 윤리위원회가 잘못되어 있는지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박세일 의원처럼 용감하게 국회의원 직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구차한 꼴을 국민 여러분에게 보여 드린 점에 대하여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윤리위원회 징계소위는 지난 6월 3일에도 한나라당 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저에 대한 징계안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3월 2일 수도 분할 이전법을 법사위 위헌성 공청회와 법사위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열린우리당 소속 김덕규 부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여 날치기 처리하던니 이제는 윤리위 징계심사까지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말하는 개혁이 이런 것입니까? 내가 하면 개혁이고 남이 하면 날치기입니까?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을 때 열린우리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어떻게 깬판쳤습니까? 내가 하면 민주주의이고 남이 하면 깬판입니까? 내가 하면 훈장이고 남이 하면 징계입니까? 왜들 이러십니까?

수도 분할 이전법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반국민적인 법률입니다. 위헌적이고 반통일적인 법률입니다. 망국적 법률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주인이 아닙니다. 610년이 넘는 수도를 허무는 일은 국민투표 없이는 못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 10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핵심입니다. 병자호란이 나도, 임진왜란 때도 수도 서울은 옮기지 못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조선총독도 6·25 전쟁도 군사쿠데타도 서울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국민여론도 수도 이전에 반대합니다. 아무리 그럴 듯한 궤변을 늘어놓아도 국민 다수는 수도 분할 이전이 수도 이전의 위장 복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수도 분할 이전을 중단해 주십시오. 공공기관 이전을 중단해 주십시오. 꼭 원한다면 국민투표를 먼저 실시하십시오. 수도 분할 이전은 수도 이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에다가 비효율이라는 부담을 더 짊어지울 뿐입니다. 수도 분할은 수도 이전보다도 더 망국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수도 분할 이전법과 176개 공공기관 이전은 다시 위헌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헌판결을 막아 보기 위하여 헌법재판관의 뒷조사를 하여

들춰내어 사직케 하고 그 빈자리에 대통령의 심복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며 인간힘을 쓴다고 하여 역사와 국민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 윤리위원회는 헌법과 국민의 의사를 지키려 했던 저와 이재오 박계동 배일도 의원을 징계하기 이전에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이며 반통일적이고 망국적인 수도 분할 이전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역사적 범죄자부터 먼저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 국회 윤리위원들은 이미 윤리위원 직을 사직하였습니다. 국회 윤리위원회야말로 개혁대상임을 김원웅 위원장 자신이 스스로 두들긴 방망이로 만천하에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급합니까? 권력의 꽃단지에 취해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명령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17대 국회가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망국적 수도 분할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을 중단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국민의 뜻을 물읍시다.

둘째, 열린우리당의 상습적 날치기와 편파 판정으로 이미 윤리적으로 타락해 버린 윤리특위를 해산하고 새로운 윤리위원회를 구성합시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원기 다음은 주성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입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어제 열린우리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본 의원에 대해서 공개 사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대구 사과는 들어봤어도 공개 사과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거 먹는 겁니까? 과일의 일종인가요?

지난해 이철우 전 의원 관련 발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는 응당 해야 할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한 책무였다는 것이 지금도 본 의원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국가 기밀에 상시 접근하는 현직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김일성의 초상화와 인공기 앞에서 전사

로서의 충성 맹세를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고도 침묵해야 한다면, 그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윤리라면 저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민주주의론’의 저자 나탄 샤란스키는 북한에서는 마음 속 생각을 입으로 말하면 바로 죽기 때문에 눈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 속 생각만이 아닌 언론 보도와 사법부 판결에 근거한 사실을 얘기했지만 징계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4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회령 지역에서 벌어진 야만적 즉결재판과 공개처형 동영상을 질의 자료로 상영해 줄 것을 법사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의 정당한 요구는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거부되었습니다.

주민들을 야만적 즉결재판으로 공개처형하는 김정일 정권에 대해 국제사회가 모두 분노하고 있는데 정작 동포들의 아픔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우리 정부 여당은 입을 막고 눈을 가리기에 급급합니다.

정동영 장관은 얼마 전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시원시원하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라는 인상을 받았다. 즉석에서 처결해야 할 문제는 직접 결단을 내리고 지시를 해 주시기도 했다”, 자기 주민을 시원시원하고 결단력 있게, 즉석에서 처결하는 정권은 비난받아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국회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 정무위원회에 법안 제안설명을 하러 참석했습니다. 마침 그날은 김희선 정무위원장의 부친 전력 문제로 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부친이 일제시대 독립군 잡는 일경 특무로 근무하였다는 짙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버젓이 독립군의 자손이라며 온갖 후안무치한 행동을 보여 준 김희선 위원장 앞에서는 아무리 의례적이라지만 존경한다는 말을 차마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예의 없는 의원입니까?

얼마 전 헌법재판소 모 재판관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의혹을 받고 사퇴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김원웅 의원도 복잡한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과거 수도이전 현재 위헌판결과 관련해서 백주 대로에서 ‘유신시대 판사’ 운운하며 현재 재판관들을 모독해 왔던 장본인입니다.

저는 적어도 김원웅 의원만은 윤리특별위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너무 비윤리적입니까?

또 이번 열린우리당 윤리위원 가운데는 지금 대우사태로 구속되어 있는 김우중 전 회장으로 부터 대우 노동자들의 피고름 묻은 돈 1억 원을 받아 먹고 형사처벌 받은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 정치판에서 재벌 돈을 받아 먹은 썩은 정치인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적어도 이런 사람은 국회 윤리위원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그 분은 평소 자신의 노동운동 경력을 자랑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과연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을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정식으로 위 세 사람을 17대 국회의원 '비료 3적'으로 명명하고 국회 공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합니다.

윤리특위가 뭐하는 겁니까? 바로 나서야 될 자리가 이 대목입니다. 저의 이런 주장이 국회 윤리 도덕에 어긋난다면 차라리 저를 제명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노웅래 의원 의석에서 - 이 사람아! 동료 의원 간첩으로 몬 게 잘 한 거야? 어느 정도 해야지.)

26. 所得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7. 相續稅및贈與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29. 國稅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강혜숙·고진화·김덕규·김명자·김부겸·김양수·김영춘·김재경·김진표·김태홍·김한길·서갑원·서재관·서혜석·안병엽·안상수·엄호성·윤호중·이계안·이근식·이낙연·이시종·이인기·이해봉·장경수 의원 발의)

30. 關稅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강혜숙·고진화·김덕규·김명자·김부겸·김양수·김영춘·김재경·김진표·김태홍·김한길·서갑원·서재관·서혜석·안병엽·안상수·엄호성·윤호중·이

계안·이근식·이낙연·이시종·이인기·이해봉·장경수 의원 발의)

31. 特別消費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2. 交通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3. 教育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시02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26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9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문석호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문석호 재정경제위원회 충남 서산·태안 출신 문석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토지·건물가액의 통합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가격공시제의 시행에 따라 동 공시가격을 세법상의 과세기준으로 적용하는 등의 개정 내용을 수용하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가액평가와 관련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산정·고시된 가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산정·고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원기 의장, 김덕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첫째,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된 벤처기업에 대하여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도입하며 제3시장에서 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소액주주의 양도차익 비과세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BTL 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

당소득에 대하여 저율의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BTL 사업방식에 의하여 국가 등에게 공급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금지금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현행 2005년 6월 30일에서 2007년 12월 31일로 2년 6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추가하고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며 투자회사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는 등 일부 입법 미비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국세 경정청구기간 및 관세환급청구권 시효 기간을 각각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의 시판 허용에 따른 환경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유류세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휘발유 대비 경유와 LPG부탄의 상대가격비를 현행 100 대 70 대 53에서 2007년 7월까지 100 대 85 대 50으로 조정하고자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과 교통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LPG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인하하는 개정안을 채택하였으며, 경유세율 인상이 화물차 덤프트럭 등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로 하여금 이들 운송업계에 대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초 이 개정안이 200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등유 중유 LPG부탄 등 유류의 특별소비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적용 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었으나 과세 시한을 영구히 폐지하기보다는 일단 5년 연장하고 5년 후에 교육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세 시한 폐지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所得稅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相續稅및贈與稅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위원장)

國稅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特別消費稅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交通稅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教育稅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덕규 문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7인 중 찬성 233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6인 중 찬성 242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부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政夫 議員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

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마산갑 출신 김정부 의원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확대해야 됩니다. 또 빚을 내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새로운 민간투자를 통해서 재정에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서 소위 민간투자 방식인 BTL 사업 방식에 의한 민간 부문의 재원 확보에 대해서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BTL 방식에 대한 논의는 잠시 접어두고 BTL 방식에 의한 국가 등에 공급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해서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BTL 방식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확보를 위한 이 사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근본 원리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재화나 또는 용역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영세율 제도는 매출 세액은 영(零)입니다. 그리고 매입 세액은 환급을 하는 제도로서 지금까지 수출하는 재화·용역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매입되는 원재료 또는 부품 등 용역에 대해서 환급을 해 줌으로써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외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거래되는 동 종류의 재화·용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BTL 방식에 의한 건설 용역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재화라도, 예를 들어서 시멘트나 철근이라도 BTL 방식에 의한 것은 영세율 적용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세되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세행정 집행에도 상당히 신중한 장치가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BTL 방식에 의한 민간사업은 대부분이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매입 자료가 상당한 부분이 위장·가공 자료가 많다는 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어도 매입 자료의 30% 정도가 위장·가공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건설업에 대해서 BTL 방식에 의한 사업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정 집행 면에서 확실한 장치 없이 성실한 부가세 집행이 어려우므로 이를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BTL 방식에 의해서 세제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의 전반을 흔들고 또 집행에서도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이런 제도는 도저히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김정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률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충북 음성·진천·괴산·증평 출신 김종률 의원입니다.

저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관하여 찬성토론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방금 전 반대토론을 하신 김정부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근본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기해 주셨고, 두 번째는 BTL 사업 영세율 적용할 때 오히려 부당하게 공제되는 부작용이 집행 과정상에서 있다는 말씀인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TL 방식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가 과세사업자라면 매입 세액이 전액 공제가 되어 과세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방금 부가세 근본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가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발생

하는 부가가치세 세 부담을 제거해 주는 것으로서 특례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근본원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BTL 사업에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에 집행상에 어떤 부당 공제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마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법 집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공제받을 우려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개별 사업 규모가 BTL 방식보다도 훨씬 큰 BTO 방식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BTO 사업의 경우 현재도 집행상에 문제점 없이 원활하게 추진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부 의원이 제기하신 문제는 이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문제 제기한 충정은 일부 이해가 됩니다. 마는 BTL 사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종합투자계획 추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서 오히려 입법이 지연되는 경우에 현재 진행 중인 민간사업자 선정 작업에 차질도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또 부동산금을 사회기반시설 등 생산적이고 안전한 투자처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재경위에서 심의한 대안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김종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0인 중 찬성 126인, 반대 93인, 기권 11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잠깐만요」 하는 의원 있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투표 다 하셨지요?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2인 중 찬성 231인, 기권 1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2인 중 찬성 232인, 반대와 기권은 없습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하셨죠?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3인 중 찬성 187인, 반대 41인, 기권 5인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는 의원 있음)

투표 다 하셨죠?

아까 ‘아니요’ 하신 의원, 배 의원께서 조금 늦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186인, 반대 46인, 기권 5인으로서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01인, 반대 28인 기권 6인으로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7시26분)

○**부의장 김덕규** 의사일정 제34항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안영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안영근** 국방위원회 안영근 의원입니다.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김기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문병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같은 제명의 법률안 내용을 수정하여 통합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특별법에 의해 조사 대상이 되는 군의문사를 군인이 복무하는 중 사망한 자의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 중에서 1993년 2월 25일부터 이 법 시행일 까지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과, 그 이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고 또는 사건으로 하되, 과거사법에 의하여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은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이 법은 수정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수정안 제안설명이 될 텐데 제가 보아도 수정안이 더 좋습니다.

(웃음)

수정안을 잘 들어 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국방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덕규** 안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김기현 의원 등 4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 반갑습니다.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써 왔으니까 나온 김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 남구 출신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경위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안영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다만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보면, 조사 방법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 거부 시 그 열람권을 허용하고 있고, 또 진실 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이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일 제출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대안)에는 그러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또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관해서도, 과거사정리기본법에는 성직자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현상정되어 있는 군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대안)에는 성직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양자의 법률의 일관성 유지 및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본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배포된 유인

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금일 배포된 수정안 중에서 제19조제11항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제8항의……” 이렇게 시작되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이 제8항이 아니라 제11항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제11항의……’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정정하고자 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안영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훨씬 우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김기현·고홍길·김재경·김충환·맹형규·김명주·김무성·김영숙·서상기·박종근·강재섭·고경화·홍문표·이재웅·권경석·김성조·박찬숙·이성구·허천·박세환·유승민·윤건영·유기준·박순자·이계진·박창달·정갑윤·이상득·이혜훈·임태희·문병호·강창일·이인영·정성호·최재천·한광원·유선호·신학용·장향숙·장기정·김교홍·김춘진 의원 발의)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덕규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김기현 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국방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정부 제출)

36.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정부 제출)

37. 地方財政法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8. 地方交付稅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7시31분)

○부의장 김덕규 의사일정 제35항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 의사일정 제36항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 의사일정 제37항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노현송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노현송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서울 강서구를 출신 노현송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기금의 여유 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안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가 단순한 협의가 아닌 기금 신설의 타당성 심사에 준하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 신설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다.”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기금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를 기금 결산 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과 물품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과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용품의 양여 대상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추가하였고,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의 시달 제도를 개선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입법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안에서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에 기초한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 결과가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보통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입법체계상 교부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아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안에서 지방예산 과정에 주민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공감하나 특정 이해집단에 의한 개입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의무적으로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에서 보통교부세의 감액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체계상 부적절하므로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여 당해 자치단체 재정이 현저하게 부실하게 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당해 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어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재정 제도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 심사보고서

地方財政法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행정자치위원회)

地方交付稅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위원장)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

○부의장 김덕규 노현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3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4인 중 찬성 221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2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의원 경기 김포 출신의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당초에 정부에서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반대를 하였고 행자위에서는 그 이후에 일부 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바뀌어서 이 법안이 심사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행자부장관이 자치단체의 재정분석과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이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해서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재정의 페널티로 활용해서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통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을 지원하여 각 지자체가 재정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정재원입니다. 즉 지방교부세는 전국적인 세원의 편재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재정의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국세의 일부를 지방재원으로 보전해 주는, 본래 지방세 성격을 갖는 독립된 자주적 재원입니다.

그래서 명칭도 교부금이라고 하지 않고 교부세라고 하는 것도 본래 지방세적 자주적 재원이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재정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바로 과거 중앙집권적 사고의 연장이고 또한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자치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통제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육성에 저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를 갖고 재정 통제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백번을 양보해 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논리가 방만한 지방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서 이 내용의 법이 설령 필요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법이 갖는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광역단체의 경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입니다. 기초단체의 경우는 특별시·광역시 모든 구와 수원 성남 안양 안산 고양 용인 과천, 이와 같은 큰 시들은 전부 다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입니다.

즉 전국의 50% 이상 광역단체와 60% 가량의 기초자치단체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많은 이러한 반 이상의 단체에 대해서는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힘이 세고 돈 많은 데는 통제할 수도 없고 힘이 약하고 재정이 빈곤한 지방자치

단체에 대해서는 재정 통제를 가하는,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도 지방교부세법에 보면 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해서 현저히 과도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또는 징수해야 할 지방세 징수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보통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한 범위 내에서 감액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법령에 위반한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 조항을 신설해서 법령에 위반되지도 않았는데 행자부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감액을 한다는 것은 앞의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한 이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 스스로가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통제한다는 것은 바로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반할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를 경시하고 또 무력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육성 발전시키면서 키워 나가야 될 지방자치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이런 부분에 대한 법안 발상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 반하고 또 교부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와 본질에 반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서 이 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는 저의 입장을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잘 심사숙고해서 표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유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112인, 반대 110인, 기권 5인으로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9. 賞勳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40. 새마을금고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1. 大韓消防共濟會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7시50분)

○부의장 김덕규 의사일정 제39항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0항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대한소방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이명규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명규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대구 북구 출신 이명규 의원입니다.

먼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훈법중개정법률안과 최규식 의원 및 노현송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건의 법안을 통합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상훈법은 훈장을 치탈하는 절차조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서훈을 추천한 기관장의 서훈 취소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국무회의 상정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훈 취소는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서훈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상당한 기간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서훈 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서훈 취소 절차 및 서훈 취소요청의 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새마을금고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금고에 1인 이상의

상근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며, 금고 이사장의 연 임 횟수를 종전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둘째,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충원하고 감사 기능을 전담하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셋째, 금고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타 법인의 출자를 허용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의 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하였고,

둘째, 개정안에서 새마을금고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 다소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대한소방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賞勳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자치위원장)

새마을금고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大韓消防共濟會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

○부위원장 김덕규 이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金容甲 議員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시간을 뺏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간곡한 마음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상훈법 개정안 반대를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집권 이후 만든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반쪽짜리 위원회라는 혹평까지 감수하면서도 자신을 핍박하고 흑인들을 학살하고 착취했던 과거의 백인정권을 용서했습니다. 그러한 용서와 화합의 토대 위에 남아공화국은 아프리카대륙의 정치적 중심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놀라운 관용과 화합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상훈법 개정안은 사실상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의 훈장을 박탈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3일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 의장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5·18 또는 12·12 관련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훈장을 박탈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물론 1980년 당시 막대한 피해를 입으셨던 광주시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나 지난 정권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박해를 당했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의도 자체가 나쁘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상처인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5공화국의 집권 과정에 과오가 있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을 죽고 다치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광주시민 여러분들께서 당하셨던 피해에 대해서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나 5공화국 집권 과정의 과오까지 부정하고자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복수의, 보복의 사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5공화국은 집권 과정에 잘못이 있었지만 오히

려 그러한 과오를 극복하기 위해 어느 정권보다도 열심히 노력했던 정권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44%에 달했던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을 0%로 안정시키는 기적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빈부격차도 줄였고 도시와 농촌 격차도 그 어느 때보다도 적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잘사는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88올림픽을 유치해서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이 마침 6월 29일입니다마는, 민주화의 분수령이었던 6·29선언으로 대통령직선제를 도입해서 최초로 평화적 정권이양을 이루어 낸 정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민주화된 대한민국이 건설되는 데 초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과들이 집권 과정의 과오를 덮을 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 과정의 과오에 대해서 전두환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 백담사 유배생활까지 했으며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모두 법정에 섰고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YS 정권과 DJ 정권 10년을 거치면서 이미 두 전직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힌 채 무거운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훈장까지 빼앗겼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훈장 같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MBC 드라마 ‘제5공화국’은 광주 민주화운동 장면을 계속 방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화면을 보시면서 분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흥미 위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드라마 속의 장면들이 마치 역사적 실체인 것처럼 과장되고 왜곡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현대사 다시 보기’가 끝을 알 수 없는 보복의 연장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그동안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여러분은 이 나라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쥔 권력을 복수와 앙갚음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당장의 승리는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용서와 화합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진정한 역사의 승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화합의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좌익운동을 했던 사람들까지도 민주화 유공자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심지어 6·25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 동포를 죽였던 북한 김정일 정권과도 화해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용과 화합의 마음이 우리 안으로도 베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상훈법 개정안이 또 다른 보복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혹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이것을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보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반대토론을 한 것은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며 어디까지나 국회의원 저 개인의 입장에서 여러분께 호소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국민 화합차원에서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김용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6인 중 찬성 167인, 반대 38인, 기권 21인으로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5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3인, 기권 1인으로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소방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0인 중 찬성 224인, 반대 3인, 기권 3인 으로서 대한소방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이인기·최규식·서재관·제종길·노현송·조성래·원혜영·강창일·안병엽·우제항·우제창·양형일·정의용·심재덕 의원 발의)

43.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노현송 의원 대표발의)(노현송· 강창일·강혜숙·구논회·김명자·김성곤·김재경·김재홍·문학진·박기춘·박상돈·박재완·서재관·신기남·신중식· 심재덕·양형일·엄호성·오제세·우원 식·우제창·우제항·원혜영·유인태·유 필우·이계경·이낙연·이시중·이원영· 이윤성·전병헌·정청래·조성래·조일현· 최규식·홍미영 의원 발의)

44.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현송 의원 대표발의)(노현송·강창일·구논회· 김낙순·김명자·김재경·김재홍·김태 홍·박기춘·박상돈·박재완·서재관· 송영길·신국환·신기남·심재덕·안병 엽·양형일·엄호성·오제세·우원식· 우제창·우제항·원혜영·유필우·이계 경·이근식·이낙연·이시중·이원영· 이윤성·이해봉·조성래·조일현·최규 식·홍미영 의원 발의)

(18시06분)

○**부의장 김덕규** 의사일정 제42항 위험물안전관 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소방시설 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사일정 제44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을 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최규식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최규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서울 강북구를 출신 최규 식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위험물안전관 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 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먼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소방검정 공사가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 시하는 경우 수수료 징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 려는 것으로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 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하였는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 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을 특정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도록 할 경우 영업주에게 수수료 부담의 문제 등이 발생할 우 려가 있으므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시 소방시설 관리사의 참여 없이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경우 과 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 주요 내용은 소방방재청장에게 소방검사 권을 부여하고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 용기계·기구에 대한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 된 동일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얻을 수 없도 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김덕규 부의장, 박희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택의 공급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력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 설계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대통

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건축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위치, 구조, 수용인원, 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등을 설계하도록 하려는 것 등으로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

○부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지요?

그러면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4인 전원 찬성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7인 전원 일치 찬성으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1인 중 찬성 208인 기권 3인으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5. 請願警察法 一部改正法律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강봉균 · 김우남 · 김재경 · 김재윤 · 김재홍 · 김종률 · 김태홍 · 김혁규 · 김희정 · 노현송 · 박계동 · 박기춘 · 박세환 · 신중식 · 양형일 · 유정복 · 이계안 · 이호웅 · 최인기 · 최철국 · 허천 의원 발의)

46.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 · 백원우 · 이원영 · 이용희 · 임종석 · 지병문 · 유기홍 · 구논희 · 장향숙 · 박기춘 · 우제항 의원 발의)

(18시12분)

○부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인기 의원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인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이인기 의원입니다.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신분을 공무원으로 하고, 둘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명예퇴직 및 휴직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에 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은 공무원 총정원제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되 명예퇴직과 휴직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 진행되는 공사는 심각한 교통 정체와 보행자의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할 경찰서장이 도로공사 시간을 도로 사정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공사 관리는 도로관리청의 업무로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공사장 주변의 교통 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과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절차적 요건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請願警察法 一部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희태 이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인으로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

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9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7. 國民體育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48. 體育施設の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18시17분)

○부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8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존경하는 김재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김재홍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의 비례대표 김재홍 의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강성종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각각의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이 2건의 개정안은 거의 유사한 내용인 점을 감안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애인 체육 업무의 중요성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 체육 업무를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되 장애 치료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생활체육은 현행대로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 체육 업무의 특수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한체육회와 별도로 대한장애인 체육회를 설립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안민석 의원 및 강성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이 2건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애인 체육업무의 문화관광부로의 이관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장애인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도 사무인 등록체육시설업 중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그리고 종합체육시설업을 시·군·구 사무인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골프장시설의 농약 사용량 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광역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로 이양하는 등 체육시설에 관한 사무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國民體育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관광위원장)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

○부의장 박희태 김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인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9.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50. 中小企業創業支援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김교홍·김용갑·김태홍·김형주·문학진·박순자·배기선·안경률·오영식·유기홍·이광재·이광철·이미경·이영호·이원영·장경수·정봉주·최규성·최재성·한병도 의원 발의)

51.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서갑원 의원 발의)(서갑원 의원 외 150인 발의)

52.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18시23분)

○부의장 박희태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 49항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0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 의사일정 제52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존경하는 서갑원 의원 나오셔서 이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장대리 서갑원 존경하는 박희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순천시 출신 산업자원위원회 서갑원 의원입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김기현 의원, 류근찬 의원, 우윤근 의원, 이낙연 의원, 정병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6건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기본지원사업 등 4개의 지원사업으로 통합하고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 산정기준을 당해 발전소의 발전량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금 산정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였으며,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자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기금에 의한 지원금 외에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지원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성과보수 지급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시·군·구청장이 창업사업계획 승인 시 일괄의제 처리하는 인허가 사항을 확대하며, 창업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창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창업진흥원의 설립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에 갈음하여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창업 등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함으로

써 장애인의 경제력 향상 도모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의 수립, 장애인의 창업 촉진을 위한 장애인창업자 및 장애인 창업지원 관련 사업자에 대한 우대 지원과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근거 마련, 장애인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이 법의 적용 범위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상이자도 포함하도록 하였고, 장애인기업의 범위에 포함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비영리법인·단체이므로 장애인기업에서 제외하였으며, 장애인기업의 정의 규정에서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고용 비율의 하한을 30%로 정하되 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장애인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규정은 이미 기존 법령에 의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적용되고 있어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안경률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벤처기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회사의 자본금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국내 벤처캐피탈산업의 건전한 육성 기반 조성을 통한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시장 정착을 도모하고자 종전의 다산벤처주식회사를 폐지하는 대신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결성·운영 등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전담회사를 설립하고,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을 벤처기업에서 벤처기업 및 창업자로 확대하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자에 대하여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공장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창업자에 대한 지원 기반도 아울러 마련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산업자원위원장)

中小企業創業支援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 심사보고서

(산업자원위원회)

벤처企業育成에 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산업자원위원장)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

○부의장 박희태 서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4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1인, 기권 3인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5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인으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9인 중 찬성 207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2인 중 찬성 211인, 기권 1인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

형주 의원 대표발의)(김형주·제종길·조정식·우원식·배일도·문학진·전병현·이해봉·정봉주·구논희·노현송·최철국·최성 의원 발의)

(18시33분)

○부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존경하옵는 김형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김형주 안녕하십니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형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도입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융감독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부칙의 일부 내용 중 조항의 인용이 잘못된 규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약관 등의 제정(변경) 시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를 매년 말에 공시하도록 하며 퇴직연금사업자가 보고한 약관 등이 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약관 등의 변경·보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등의 변경 시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부디 저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

○부의장 박희태 김형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7인 전원 찬성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4.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 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김재경·이윤성·권오을·이해봉·고진화·전여옥·고경화·박재완·김애실·맹형규·조경태·최재성·정병국·문학진·유승민·신중식·서해석·엄호성·임태희·배일도·이인기·유정복·이계진·이주호 의원 발의)

(18시36분)

○부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위원회의 존경하는 안명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위원장대리 안명옥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위원회 안명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5년 4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내용으로 간병인 지원을 추가하고 국외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적 회복 및 고국 방문, 생활안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기념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국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진상규명·배상·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 등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성위원회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는바,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생활안정지원은 제외하고 고국 방문 및 국적 회복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현행과 같이 임의조항으로 하여 탄력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법률의 목적을 감안하여 국가의 의무 중 배상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이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 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여성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

○부의장 박희태 안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4인 중 찬성 203인, 기권 1인으로서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5. 2005년도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정부 제출)

(18시40분)

○부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2005년도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존경하는 김영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영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 광진구갑 출신의 김영춘 의원입니다.

2005년도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 체불 근로자들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임금 체불 근로자들의 경제적 곤란 및 법률 지식의 한계 등 무료 법률구조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희태 김영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0인 전원 찬성으로 2005년도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6.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57.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18시43분)

○부의장 박희태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56항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의사일정 제57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성권 의원 나오셔서 이 2건에 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이성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이성권 의원입니다.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은 영국, 미국, 일본 등 58개국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고 있는 유럽평의회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와 협약 당사국들 간에 해당 수형자의 상호 이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재외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재외 수형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주한미군에 고용되어 있는 한국인 고용원의 인건비와 주둔에 관련되는 다른 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와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다른 경비의 일부를 분담하되, 분담금은 인건비·건설비·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 및 군수비 등으로 구성되고,

둘째, 협정의 유효기간은 2005년도 및 2006년도 2년간으로 하며,

셋째, 2005년도 방위비 분담금은 2004년도 7469억 원 대비 8.9% 감액된 6804억 원으로 하고, 2006년도의 경우 2005년도와 동일한 6804억 원으로 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희태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인 의원 단하에서 - 반대토론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의사일정에 안 들어 있는데요?

(○임종인 의원 단하에서 - 지금 제가 신청하고자 합니다.)

넣어 드릴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벌써……

(○임종인 의원 단하에서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

그것은 아직 아닙니다. 조금 이따 나오세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5인 전원 찬성으로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방위비 분담금 협정안은 전면 재협상되어야 한다고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번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은 전액 원화로 지불되기로 하였고, 원화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 8.9% 감액된 6804억 원으로 미측과 합의를 보았다며 정부는 원화 기준으로 삭감되었다는 점을 최대의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매년 방위비 중에 원화와 달러화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두고 비중 있는 협상을 벌여 왔습니다. 실제 1998년의 경우에는 전액 달러화로 지급하기로 했다가 환율이 급속도로 오르자 원화 비율을 57%로 높인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협상은 달러화의 지속적인 약세가 예상되는 시점이었으므로 달러화의 비율은 월등히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협상 전략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협상 전략의 미숙함은 전연 언급하지 않은 채 원화로 주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며, 원화 기준으로 삭감되었으므로 성공한 협상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전액 달러화 지급을 요구하고 달러화 기준으로 삭감을 주장했다라면 우리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수백억 이상 아

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매력의 문제도 있습니다. 외교부는 사용자만 미군일 뿐이지 전액 원화로 지급되고 한국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무의미한 허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거 전액 달러로 지급되었을 때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미군은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미국은 번거롭게 왜 달러 지급을 요구했겠습니까?

한국인 고용자에 대한 인건비는 틀림없이 원화로 지급되었겠지만 군수비·건설비·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는 달러로 구매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두 번째, 미군은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3000명과 2000명이 줄어들 계획이고 2008년까지는 총 1만 2500명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주한미군의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줄어든다고 해서 같은 비율로 방위비 분담금이 줄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단 한 번도 감축과 동일한 비율로 방위비 분담금이 줄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미군이 줄어드는 만큼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어 주는 막사도 줄어들 테고 전투근무지원시설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므로 이에 맞게 방위비 분담금을 줄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군은 미군 감축에 따라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인력 조정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미군은 10년간 17% 이상 감축되었지만 방위비 분담금은 10년 전에 비하면 2005년, 2006년은 거의 90% 정도 평균 증액된 내용이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와 반면에 미군은 이번 4월에 한국 노동자 1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또 선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지 재배치 등의 과도기에는 부대비용이 오히려 증가될 수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작년에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우리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용산기지이전협정이 통과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른 미 2사단 이전에도 우리는 1조 5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분담합니다. 과도기에 분담하는 것이 이 정도면 차고도 넘칩니다. 뭘 또 우리가 더 분담해야 한다는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카투사라는 군역을 통해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군을 지원해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카투사 지원에 의한 미군의 인건비 절감이 1억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군은 이에 대해 단 한푼도 평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원해 주고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직·간접 지원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며 방위비 분담금의 삭감을 요구하는 협상을 당당히 했어야 했는데도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도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따질 것은 따지고 거부해야 할 것은 거부하는 당당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정부도 협상을 더 잘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미국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기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미국을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친구로 생각하지 미국이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합니까? 막내동생만치도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막내동생 같은 사람에게 한쪽에는 사탕 2개 넣어 주고, 한쪽에 있는 주머니의 떡을 빼앗아 가는 이런 미국에게 우리 입법부가 이제, 정부는 할 수 없이 그렇다 하더라도 입법부는 당당하게 이번에 올라온 이 비준안을 거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인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토론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반대토론을 두 번 하려고 하다가 한 번은 성공치 못하고 이번에 겨우 부의장님의 배려에

의해서 성공했습니다.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 안건이 올라온 줄 모르고 미리 신청을 못 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이 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오게 됐습니다.

강기갑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작년 12월 9일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문제에 관한 안이 올라왔을 때 제가 여기에 나와서 반대토론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과 비슷한데요.

국방부에서 6804억으로 이번에 증액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하면서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이 협상은 외통부에서 했습니까다마는, 저는 그 점을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군은 10% 이상 증액을 요구했고 그 기간도 5년으로 하자고 했는데 기간과 금액에 있어서 우리 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은 일정 부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방위비 분담금은 최소한도 4000억 원 이하로 감액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한미군이 6·25전쟁 후 한 30년 정도는 대북 억지력, 북한을 억지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75년 이후 30년 동안 우리가 방위비를 70조 이상 투자하면서 대북 억지력의 기능은 없어지고 이제 신속기동군화…… 주한미군 유연화에서 보듯이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군이 주둔하는 이런 점이 매우 커졌고, 앞으로 계속 커질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택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대북 억지력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 의해서도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이것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강기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8년까지 미군이 1만 2500명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3분의 1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7000억에서 한 4000억 원으로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비용 부담이 2008년까지 매우 과도합니다. 용산기지이전협정에 따라서 우리가 5조 5000억 원이나 부담해야 됩니

다. 지금 국방비가 1년에 20조이고, 우리나라 사병들의 봉급이 2900억입니다. 3000억만 감액해도 현재의 봉급이 4만 5000원인데 9만 원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병 복지가 너무 안 돼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GP에서 김 일병 사건이 났고, 내무반에서 26명이 자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GOP에서, 침상에서 40명이 자고 있습니다. 40명이 자는데 5월에 거기에 가 보니까 밤에 온도가 27℃, 28℃로 이렇게 덥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있는데 우리가 7000억 원씩이나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라크 파병으로 인해, 이라크 파병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연 2000억 원을 우리가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기갑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카투사를 파견해서 도와 주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카투사 파견에 대한 계약도, 협정도 없습니다. 50년대에 이승만 대통령하고 미군사령관하고 구두계약을 해서 카투사를 지금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산하면 1000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독일에 비해서 우리가 과다하게 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처음 내기 시작한 것은 91년입니다. 그런데 80년대에 일본과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일본이 무역 흑자를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흑자 보전을 위해서 일본 측이 방위비 분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도 부담하니까 한국도 부담하라’ 이렇게 해서 91년부터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근거로 볼 때 주한미군 분담금은 앞으로 부담을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지 사용료를 받는 정도까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 단계에서 한미 관계의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대로 6804억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000억으로 감액해야 될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나라의 일부 언론이나 일부 분들께서 미국의 이익을 먼저 대변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데 ‘왜 미국 뜻대로 안 해주느냐’ 이러한 일부 언론의 논지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말

씀드린 것을 잘 참조하셔서 우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 주시고, 전방에서 고생하는 병사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한미 관계에서도 우리가 할 말은 떳떳이 하는 진정한 한미동맹 관계로 나아가는 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희태 임종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179인 중 찬성 141인, 반대 27인, 기권 11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8.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19시03분)

○부의장 박희태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58항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존경하는 김혁규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특별위원장 김혁규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혁규 의원입니다.

그동안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내용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한 규제개혁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변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규제개혁을 통

한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활동목표로 삼았습니다.

경제단체와 행정 각 부처로부터 규제개혁 과제를 수렴하였으며, 두 차례의 공청회와 다섯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규제에 의해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제기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하여 의안심사소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61개 법률에 72건의 규제개혁 건의사항을 확정하여 본회의에 보고를 드립니다.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건의하기로 한 61개 법률에 72건의 규제개혁 건의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스템에 의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하여 국회규제개혁심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규제 관련 법률의 제·개정 시 규제영향분석서 첨부 의무화했습니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의원발의 법률안은 반드시 규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이 규제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여 규제 입법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규제 일몰제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 심사를 요청할 때는 규제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설정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매년 6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로 과도한 부담금으로 인해 기업이 겪는 부담을 완화하고, 부담금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부담금의 부과요율 등 부담금 부과요건을 개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에 의한 자의적 부담금 요율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로 중복 규제에 의한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 증가, 국민과 기업의 부담 해소를 위하여 개별 법률에 의해 공장 설립의 인허가를 행하는 경우 의제 처리되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으며,

넷째로 그동안 행정조사가 행정편의 위주로 이루어져 행정조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정조사의 대상 및 요건을 구체화해서 행정조사의 객관성과 당위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내용 및 조사일시 등 조사계획을 사전에 기업체에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위해서 기업 혹은 영업소 등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자와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피조사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는 복잡한 규제를 정비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존 규제의 철폐·완화에만 역점을 두어 왔으나 향후에는 규제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되는 중요 규제는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규제 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하여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제는 폐지하거나 그 근거를 법률에 명기함으로써 법률유보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규제라 하더라도 법문에서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고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여 법 해석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규제와 관련된 불분명하고 모호한 법문 표현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해 나갈으로써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규제개혁은 단기적이고 일과성 활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점에서 국회에 규제심의기구를 상설화하여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함)

그리고 규제개혁을 위한 61개 법률안 개정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여하신 동료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희태 김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19시10분)

○부의장 박희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세 분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의원 존경하는 박희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수성을 출신의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입니다.

어제 국회 윤리특위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에 대해서 ‘출석정지 5일’, 주성영 의원에 대해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라는 중한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공개사과와 출석정지는 제명 다음의 중징계로 1991년 윤리특위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최고의 징계요구입니다.

김문수 의원이 법사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본회의장에서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이미 위헌결정이 내려진 행정수도이전법 유사법안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점과 직권상정의 위법성에 대한 지적 및 망국적 수도 분할에 대한 절절한 반대와 항의의 충정을 적극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노무현 의원이 5공청문회 석상에서 명패를 던졌던 사례라든지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현재의 열린우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한 행동 등에 비추어 결코 출석정지라는 초유의 중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성영 의원의 발언은 이철우 전 의원이 ‘김일성의 초상화와 인공기 앞에서 충성을 맹세했다’는 간첩 방조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확정된 판결문과 미래한국신문의 보도기사, 그리고 이철우 전 의원 자신이 한 ‘천하의 빨갱이가 철책선에서 당선되었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등 발언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경우 허위의 사실로 이 전 의원을 모욕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에 반해서 모 건설회사 사장과 도지사 그리고 한나라당 이모

의원 3자 간의 공생관계는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인다고 두 차례나 발언하여 징계요구되었으나 끝내 아무런 소명도 제출하지 못한 열린우리당 소속의 이모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형식적으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열린우리당 의원 특히 열린우리당 윤리위원들에 대해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할 경우에도 경고에 그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윤리특위는 경기로 말하면 심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구성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심판은 이미 더 이상 심판일 수가 없습니다. 오랜 의회정치 경험을 가진 미국과 영국이 의석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 위원만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회 내에서 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열린우리당이 반수가 넘는 윤리특위 위원을 차지하면서 심기에 거슬리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과 의정활동을 사사건건 문제 삼아서 징계의 위협에 내몰게 한다면 이는 의회정치를 근본부터 부정하고 야당의 존재 의의와 근거를 빼앗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한나라당 윤리위원들은 먼저 윤리특위의 여야 의원 정수를 조정한 다음에 미비하고 불완전한 윤리 및 징계심사 절차와 기준을 정비한 후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일관되고 형평성 있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자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으며, 이는 전문가들이 참가한 공청회에서도 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윤리위원들은 이러한 기준도 정함이 없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자당 의원들을 감싸고 상대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유례없이 가혹한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모든 처벌과 징계는 공정하고 형평에 맞을 때 권위를 가지게 되고 승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이러한 윤리특위에는 더 이상 참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일치된 의사로 한나라당 윤리위원들은 모두 즉시 사퇴했습니다.

17대 국회는 언필칭 상생과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상생의 차원에서 언론으로부터 끊임없이 그 자격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어 온 열린우리당 소속의 윤리특위 위원장에 대해서도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그 언급을 자제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생이 자제로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석비율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게임의 룰에도 맞지 않

는 윤리특위의 정수 조정을 거부하는 것이 개혁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단독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을 무제한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원초적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를 해체하고 공정한 게임, 공정한 심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될 수 있는 윤리특위의 재구성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공정하지 못한 의결에 참가하여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금도조차 지키지 못한 열린우리당 특위 위원들에 대해서 맹성과 아울러 사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희태 주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의원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종로 출신 박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 해군2함대사령부가 있는 평택에서 거행된 서해교전 3주년 추모식을 다녀왔습니다. 3년 전 참수리 357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함정과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해군 장병들의 가족과 동료들의 통곡과 절규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국가안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희생해 왔으며 그러한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들은 번영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는 숭고한 희생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며, 나라를 위해서 과감히 자신을 던진 장병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군 관련 사건·사고를 접하면서 어쩌다 우리군의 안보태세와 기강이 이렇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어쩌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이렇게 불신하게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휴전선을 지키는 최전방 비무장지대 GP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수류탄 투척과 총기 난사사건이 발생해서 온 국민이 충격을 받고 군대에 아이들을 보낸 부모들이 경악을 하고 있는데도 노무현 정부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입니

까?

오늘 평소 존경하는 해군 출신 선배인 윤광웅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5분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저의 심정은 너무도 착잡합니다. 금번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은 장관 개인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의 국방안보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임안입니다.

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은 단지 8명 장병의 생명을 앗아간 GP 총기난동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 안보 정책은 중심을 잃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정치논리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국방장관을 해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과연 정부가 무엇을 위한 국방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방개혁이라는 것이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가안보를 흔드는 것입니까? 소위 지배세력의 교체를 위해서는 안보태세에 구멍이 뚫리고 최전방 GP에서 아군 병사들끼리 총기를 난사하는 참극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들의 여론을 왕조시대의 유물이나 잔재로 폄하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정치논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정부에 묻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가, 또 안심하고 자녀들을 군에 보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적 개념의 상실은 군 기강 해이와 대북관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훈련병 인분 가혹행위로 국민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주었습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최전방 철책이 3중으로 뚫리고, 동해에서 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선이 유유히 월북을 하고, 북한군 병사가 아무런 제재 없이 휴전선 철책을 넘어 월남해서 5일간 숨어 있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의 안보관이 흔들리고 바다에서, 땅에서 안보태세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들에게 정부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군의 안보태세 확립과 기강 쇄신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다시 새롭게 출발한다는 자세로 구멍 뚫린 안보 태세를 정비하고 흔들리는 국방안보정책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노무현 정부가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을 쇄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희태** 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정문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헌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출신의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입니다.

최근 최전방 초소인 GP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온 국민이 비탄에 잠겨야 했습니다. 먼저 고인이 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사건 직후 윤광웅 국방장관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도 처음에는 사고 수습과 후속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사표 처리를 유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결식이 끝나고 어물쩍대더니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결국 국방장관을 유임시키겠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고인이 된 희생자의 억울함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또 다시 몇 명의 숭고한 희생자가 더 발생해야 지휘·통제의 책임, 군 기강 해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입니까?

국방부는 사건 직후 언어폭력 탓이라고 하더니 진상조사 결과 김 일병의 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군 기강 해이 문제나 병역관리 시스템 문제 등에 최고 지휘관인 국방장관의 책임은 묻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윤 국방장관은 이제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교 후배인 대통령의 그늘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진 사람이라면 체통을 지킬 줄 알아야지 후배가 붙잡는다고 놀러 앉는 것은 무슨 행태란 말입니까? 아니면 김 일병의 인성 문제가 윤 장관에게 면죄부를 쥐어 줬습니까?

이미 6군단장과 28사단장은 사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사고 GP의 연대장과 중대장은 보직 해임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사고 수습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손바닥 뒤집듯 국방개혁의 지속이라는 이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방개혁의 미명 아래 자기만 살아남아서 부하들의 사표를 받고 또 보직 해임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장관은 더 이상 군단장과 사단장의 사표를 받을 자격도, 권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책선이 뚫렸을 때도 훈련소 인분사건이 있었을 때도 국방장관은 분명히 윤광웅 씨였습니다.

군인은 명예와 사기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코드가 맞아서 고등학교 동창이라 잘리지 않고 부하들의 사직서를 받게 된다면 무슨 명예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장병들은 장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겠으며, 또 그들의 사기 저하는 누가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윤 국방장관만 유입시키고 연대장·사단장·군단장 등의 부하들을 줄줄이 사직 또는 보직 해임시키는 것을 두고서 왕조시대의 책임관이라고 해야지 엉뚱한 데 두고서 왕조시대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러한 졸속 인사 처리는 선이 굵은 지휘관이나 장군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동네 놀개들이 하는 인사다라는 비판을 받게 될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이번 개각은 노무현 대통령의 창기기 인사의 진면목을 보여 주었습니다.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결단이 결국 패자부활전,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부지런히 모아서 자리를 챙겨 주기였습니다.

과연 낙선자들을 살리고 비전문 장관을 발탁하는 것이 진정 이 나라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었습니까? 공직이 무슨 패자부활전 동호회도 아니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성군인 양 보은 인사와 정실 인사를 계속하는 것이 왕조시대의 발상이 아닌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옛날 은나라 주왕은 무조건 따르는 1000명의 말만 듣고 있다 망했습니다. 코드인사의 귀결은 불 보듯 자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떳떳하게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은 나라가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인사가 문제 있음을 지적하고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인데 자리에 연연해서야 어찌 명예로이 국방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윤 장관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떳떳하게 물러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희태 정문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6분 산회)

.....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刑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48인)

찬성의원(248인)

장기갑	장기정	장길부	장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혜숙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숙	박창달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영순
 이영호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해훈 이화영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체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연희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재천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병도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태열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재형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황재하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김정부 김태년 김한길 김형주
 김태홍 김혁규 김효석 남경필
 김태환 김현미 김희선 노영민
 김충환 김형오 김희정 노웅래
 김학오 김희정 노웅래 김상춘
 김희정 노웅래 김상춘 김성범
 김희정 노웅래 김상춘 김영선
 김희정 노웅래 김상춘 김창달
 김희정 노웅래 김상춘 김재관
 김희정 노웅래 김상춘 김륜용
 김희정 노웅래 김상춘 김명옥
 김희정 노웅래 김상춘 김영근
 김희정 노웅래 김상춘 김호성
 김희정 노웅래 김상춘 김윤근
 김희정 노웅래 김상춘 김기홍
 김희정 노웅래 김상춘 김시민
 김희정 노웅래 김상춘 김필우
 김희정 노웅래 김상춘 이경숙
 김희정 노웅래 김상춘 이광철
 김희정 노웅래 김상춘 이기우
 김희정 노웅래 김상춘 이병석
 김희정 노웅래 김상춘 이상열
 김희정 노웅래 김상춘 이승희
 김희정 노웅래 김상춘 이윤성
 김희정 노웅래 김상춘 이재웅
 김희정 노웅래 김상춘 이주호
 김희정 노웅래 김상춘 임종석
 김희정 노웅래 김상춘 장경수
 김희정 노웅래 김상춘 장향숙
 김희정 노웅래 김상춘 정덕구
 김희정 노웅래 김상춘 정봉주
 김희정 노웅래 김상춘 정의화
 김희정 노웅래 김상춘 정청래
 김희정 노웅래 김상춘 제종길
 김희정 노웅래 김상춘 조성태
 김희정 노웅래 김상춘 주성영
 김희정 노웅래 김상춘 진영
 김희정 노웅래 김상춘 최규성
 김희정 노웅래 김상춘 최순영
 김희정 노웅래 김상춘 최재성

○刑의失效等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50인)

찬성의원(24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광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의원(1인)

김기춘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창 이정일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현 전재희 정덕구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체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반대의원(31인)

고조홍 고홍길 공성진 김광원
 김덕룡 김용갑 김재경 김재원
 김정훈 김태환 김형오 맹형규
 박근혜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찬숙 박창달 안명옥 이강두
 이경재 이명규 이상배 이재웅
 임태희 장윤석 정갑윤 정문헌
 정종복 최병국 황진하

기권의원(12인)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박재완
 송영선 심재철 이규택 이목희
 이한구 이해훈 정화원 정희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52인)

찬성의원(20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진화 광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승환 박영선
 박종근 박진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해석 손봉숙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재엽 안경률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영순 이영호

○憲法裁判所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의원(253인)

찬성의원(22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조홍 고진화 공성진 광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창달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영순	이영호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정일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장병헌	정덕구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의원(19인)

고홍길	김기춘	김용갑	김재원
김정부	김형오	박근혜	박순자
박찬숙	서병수	송영선	유기준
유승민	유정복	이강두	이상배
이재창	이한구	임태희	

기권의원(5인)

전재희	정갑윤	정화원	정희수
진수희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투표의원(242인)

찬성의원(224인)

장기갑	장기정	장길부	장봉균
장성종	장창일	장혜숙	고조홍
고진화	공성진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철현	김교홍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문수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민병두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명광	박계동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숙	박창달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김명자	김명주	김문수	김병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선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이상열	이석현	이성권	이승희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이영순	이영호	이원영	이윤성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이재창	이정일	이주호	이진구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장복심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문헌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박진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서혜석	손봉숙	송영선	신계륜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반대의원(12인)

고홍길	곽성문	김기현	김병호
김재원	김충환	서병수	안홍준
유승민	이종구	이혜훈	황진하

기권의원(6인)

김기춘	김영선	송영선	이상배
이한구	정화원		

○치료감호법안(대안)

투표의원(246인)

찬성의원(24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조홍
고진화	공성진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영순
이영호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의원(1인)
곽성문

기권의원(4인)
고홍길 이종구 이한구 이혜훈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영순
이영호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의원(1인)

김재경

기권의원(1인)

김희선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45인)

찬성의원(243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대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해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特定強力犯罪의處罰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52인)

찬성의원(25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권영길	권영세	권권오	권권철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정중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한선교	한화갑	허천영	허태열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의원(240인) 찬성의원(237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박진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서혜석	신병렬	손봉숙	송영선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김양수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춘진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이강두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계경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이강래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문희상
이상배	이승희	이영순	이영호	박병석	박성범	박세환	박명광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승환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박창달	박형준	배기선	박찬숙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박창달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화영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서재관	서혜석	신병렬	손봉숙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전병현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신 학 용	심 재 업	심 재 철	안 경 료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김 교 홍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병 호
우 제 창	원 혜 영	원 회 룡	유 기 준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조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승 희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선	김 영 숙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계 경	이 계 안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부	김 정 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민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선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석 현	이 성 구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이 승 회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원 영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결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근 혜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한 구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성 범
이 해 봉	이 해 훈	이 화 영	임 인 배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임 채 정	임 태 희	장 경 수	장 복 심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숙	박 창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정 갑 윤	박 형 준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정 문 현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서 해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청 래	정 형 근	신 계 룡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중 식
정 화 원	정 희 수	제 종 길	조 경 태	신 학 용	심 재 업	심 재 철	안 경 료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승 수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조 일 현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진 영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경 환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최 구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원 회 룡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선 호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시 민	유 인 태
한 병 도	한 선 교	한 화 갑	허 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원 호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미 영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황 진 하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이 기 우

기권의원(3인)

김 기 춘 송 영 선 전 재 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의원(246인)

찬성의원(245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중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곽 성 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홍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선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숙	박 창 달
박 형 준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해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계 룡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재 업	심 재 철	안 경 료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혜 영
원 회 룡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승 회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해 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채 정	임 태 희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승수
 조일현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의원(1인)

이호웅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승수
 조일현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반대의원(2인)

김충환 안상수

기권의원(4인)

김기춘 김정부 최경환 한광원
 (박찬숙 의원 머튼 조작 착오. 실제 찬성의원 242인, 기권의원 4인임)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투표의원(248인)

찬성의원(24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광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학송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주
 김혁규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희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계륜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투표의원(237인)

찬성의원(23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희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승희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의원(1인)

정세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39인)

찬성의원(228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신중식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재건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선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승희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태희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문현	박병석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박진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조일현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진영	채수찬	최경환	최구식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한화갑	허천	허태열	홍미영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반대의원(9인)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강기갑	김영선	단병호	심상정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이영순	조경태	조승수	천영세	유시민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최순영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기권의원(2인)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권영길	노회찬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정세균 의원석 비튼 조작 착오. 실제 재석의원 239인, 찬성의원 228인임)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승희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44인)
 찬성의원(242인)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의원(2인)
유정복 이한구

박진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열	이성구
이승희	이영순	이영호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의원(1인)

김광원

기권의원(4인)

이상배 이한구 정갑윤 정희수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48인)

찬성의원(243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國家有功者等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48인)

찬성의원(247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춘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승희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창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의원(1인)

이한구

○음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투표의원(249인)

찬성의원(133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진화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홍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종률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신계륜	신기남	신학용
심상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 광 철 이 근 식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영 이 종 길
 이 호 응 이 화 영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향 숙
 전 병 헌 정 덕 구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장 선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규 식 최 성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반대의원(112인)

강 재 섭 고 조 홍 고 홍 길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덕 룡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병 호 김 석 준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선 김 용 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권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충 환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효 석
 김 희 정 남 경 필 류 근 찬 맹 형 규
 박 계 동 박 근 혜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희 태 배 일 도
 서 병 수 서 상 기 손 봉 숙 신 국 환
 신 상 진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명 옥 안 상 수 안 홍 준 엄 호 성
 원 희 룡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정 복
 이 강 두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균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승 회 이 윤 성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혜 훈 임 인 배 임 태 회 장 윤 석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문 헌 정 병 국
 정의화 정 종 복 정 진 석 정 형 근
 정 화 원 정 회 수 주 호 영 진 수 회
 진 영 최 경 환 최 구 식 최 병 국
 최 인 기 한 선 교 한 화 갑 혀 천
 혀 태 열 홍 문 표 홍 준 표 황 우 여

기권의원(4인)

김 성 조 이 상 열 최 순 영 최 연 회

○信託業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35인)

찬성의원(235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홍 길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홍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부 김 종 룡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용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근 혜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신 계 룡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신 중 식
 안 경 룡 안 명 옥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성 구
 이 승 회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창 이 종 걸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혜 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정문현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정중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채수찬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이상열	이성구	이승희	이영순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韓國産業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의원(236인)

찬성의원(236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명광	박병석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證券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42인)

찬성의원(237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동철 김문수 김선미 김영주 김원기 김재윤 김춘진 김태환 김형오 나경원 노현송 문병호 민병두 박병석 박종근 박형준 백원우 서상기 손봉숙 신상진 심재철 안병엽 양승조 오제세 원희룡 유승민 유재건 윤호중 이경재 이광철 이명규 이상득 이성구 이용희 이인기 이종걸 이혜훈 임종석 장경수 전병헌 정덕구 정성호 정종복 제승수
 김명자 김병호 김성조 김영춘 김원웅 김정권 김충환 김학송 김형주 남경필 노회찬 문석호 박계동 박승환 박진태 변재일 서재관 신계륜 신중식 안경률 안상수 양형일 우상호 유기준 유승희 이정복 이강두 이계경 이근현 이미경 이상민 이승희 이원영 이인영 이종구 이호웅 임종인 장복심 전여옥 정문헌 정세균 정진석 조배일
 김명주 김부겸 김애실 김용갑 김재경 김정부 김태년 김혁규 김효석 노영민 단병호 문학진 박근혜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서갑원 서혜석 신국환 신학용 안명옥 안택수 엄호성 우윤근 유기홍 유시민 유필우 이강래 이계안 이근식 이방호 이영순 이윤성 이인제 이주호 이화영 임채정 장윤석 전재희 정의용 정청래 조성성
 김무성 김석준 김양수 김우남 김재원 김중률 김태홍 김현미 김희정 노웅래 류근찬 문희상 박명광 박재완 박찬숙 배일도 서병수 신기남 심상정 안민석 안홍준 오영식 우제항 유선호 유인태 윤원호 이경숙 이계진 이낙연 이병석 이상열 이영호 이은영 이재창 이진구 임인배 임태희 장향숙 정갑윤 정봉주 정의화 정희수 조성태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반대의원(3인)

김영선 박세환 심재엽

기권의원(2인)

이한구 정화원

○先物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46인)

찬성의원(239인)

장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김중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명광 박병석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태 배기선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서갑원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혜석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안민석 안홍준 안명옥 안영근
 오영식 오영식 오영식 오영식
 우제항 유선호 유인태 윤원호
 이경숙 이계진 이낙연 이병석
 이상열 이영호 이은영 이재창
 이진구 임인배 임태희 장향숙
 정갑윤 정봉주 정의화 정희수
 조성태 주성영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동철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김양수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김재원	김재운	김정권	김정부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낙연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이성구	이승희	이영순	이영호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창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박명광	박병석	박승환	박영선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정덕구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국환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심상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낙연
반대의원(6인)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곽성문	김석준	김영선	박세환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심재엽	주호영			이성구	이승희	이영순	이영호
기권의원(1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한구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46인)			
찬성의원(238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구노희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반대의원(6인)
 광성문 김석준 김영선 박세환
 심재엽 주호영

기권의원(2인)
 김애실 이한구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안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민
 이상열 이성구 이승희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창
 이종걸 이주호 이진구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영 최구식
 최규식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
 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47인)

찬성의원(197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조홍 고진화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김양수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운
 김정권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엽
 안경률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반대의원(41인)

강기갑 고흥길 광성문 권영길
 권철현 김광원 김무성 김석준
 김애실 김정부 노회찬 단병호
 박계동 박근혜 박재완 박찬숙
 박형준 배일도 서병수 심상정
 안명옥 안홍준 엄호성 유승민
 이계경 이계진 이균현 이영순
 이종구 이한구 이혜훈 전여옥
 정문헌 정병국 조승수 주호영
 진수희 천영세 최병국 최순영
 현애자

기권의원(9인)

강성종 김기춘 김태환 김형오
 심재철 이상득 이상배 정희수
 최경환

○公認會計士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47인)

찬성의원(244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구노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애실
 김양수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명광 박병석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승희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영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의원(3인)

김성조 윤원호 정화원

○在外同胞의出入國과法的地位에관한法律 일부개정
법률안

투표의원(232인)

찬성의원(104인)

강기갑 강재섭 강창일 고조홍
 고홍길 곽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철현 김기춘 김덕규 김동철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석준
 김성조 김양수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김희정 노회찬 단병호
 문석호 민병두 박근혜 박명광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형준 박희태 서병수 서상기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유승민 유시민
 유정복 이강두 이강래 이계안
 이근식 이방호 이상배 이영순
 이윤성 이재창 이주호 임인배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윤석
 전여옥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고홍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정화원	조성래	조성태	최구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최재성	최재천	한선교	허천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허태열	홍문표	홍준표	황우여	김명자	김명주	김문수	김병호

반대의원(60인)

김광원	김선미	김애실	김영춘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원웅	김정부	김종률	김현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주
김형주	노영민	노현송	문학진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박계동	박찬석	배일도	서갑원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신중식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안병엽	안택수	양형일	엄호성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우상호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유기준	유승희	윤호중	이강래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이계안	이광철	이근식	이상민	남경필	노영민	노용래	노현송
이인영	이종걸	이한구	이호웅	노회찬	단병호	문병호	문석호
이화영	임종인	전재희	정봉주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정의용	정의화	정청래	정형근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조배숙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영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채수찬	최성	최철국	한병도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기권의원(68인)

강길부	강혜숙	고진화	권선택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국환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낙성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김낙순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김영선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김원기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김형오	김효석	남경필	노용래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류근찬	문희상	박병석	박순자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박진	박찬숙	배기선	변재일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손봉숙	심상정	안상수	오영식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원희룡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유필우	윤원호	이계경	이미경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병석	이상배	이시종	이영호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은영	이인제	이종구	이혜훈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임종석	장복심	장향숙	정덕구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정희수	제종길	조승수	진수희	이상열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최경환	최규식	최병국	한광원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한명숙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창

○所得稅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37인)

찬성의원(233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문헌
강재섭	강혜숙	고조홍	고진화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반대의원(1인)

김정부

기권의원(3인)

김영선 이방호 이한구

송영길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이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규식 최연희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재천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반대의원(1인)

김정부

기권의원(3인)

김영선 이한구 정화원

○相續稅및贈與稅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46인)

찬성의원(24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반대의원(1인)

김정부

기권의원(3인)

김영선 이한구 정화원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의원(230인)

찬성의원(126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혜숙

고 홍 길 구 논 회 권 선 택 김 교 홍 이 계 진 이 군 현 이 명 규 이 방 호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성 구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양 수 이 승 희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인 제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우 남 이 종 구 이 주 호 이 한 구 이 혜 훈
 김 원 응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종 룰 임 인 배 장 윤 석 전 여 옥 정 갑 윤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정 문 현 정 의 화 정 중 복 정 진 석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남 경 필 정 형 근 정 화 원 정 희 수 조 승 수
 노 응 래 노 현 송 문 병 호 문 석 호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수 회 천 영 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최 경 환 최 구 식 최 병 국 최 연 희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영 선 백 원 우 박 원 우 최 준 표
 변 재 일 서 갑 원 서 재 관 서 해 석 서 혜 석 신 계 룬 단 병 호 박 형 준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신 계 룬 송 영 선 이 상 열 이 영 순 이 진 구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신 학 용 송 영 선 이 상 열 이 영 순 이 진 구
 심 재 엽 안 병 엽 안 영 근 양 승 조 우 윤 근 홍 재 형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룬
 유 기 흥 유 승 희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계 안 이 광 철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미 경 이 시 중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영 이 재 창 이 종 길 임 중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향 숙
 정 덕 구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장 선 정 청 래 제 종 길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영 채 수 찬 최 규 식
 최 성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선 교 최 화 갑 허 태 열
 흥 문 표 흥 창 선

반대의원(93인)

강 기 갑 강 재 섭 강 창 일 권 경 석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기 춘 김 기 현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덕 룬 김 명 주 김 문 수 김 문 수
 김 병 호 김 석 준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애 실
 김 용 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권 김 학 송
 김 정부 김 종 인 김 충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희 정 나 경 원 노 회 찬
 박 근 혜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숙 박 희 태 배 일 도
 서 병 수 서 상 기 심 상 정 심 재 완
 안 경 룬 안 명 옥 안 상 수 안 택 수
 안 흥 준 엄 호 성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정 복 이 강 두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군 현 이 명 규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승 희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종 구 이 주 호 이 한 구 이 혜 훈
 임 인 배 장 윤 석 전 여 옥 정 갑 윤
 정 문 현 정 의 화 정 중 복 정 진 석
 정 형 근 정 화 원 정 희 수 조 승 수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수 회 천 영 세
 최 경 환 최 구 식 최 병 국 최 연 희
 한 광 원 허 천 현 애 자 흥 준 표

기권의원(11인)

고 진 화 노 영 민 단 병 호 박 형 준
 송 영 선 이 상 열 이 영 순 이 진 구
 진 재 희 최 순 영 홍 재 형

○國稅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32인)

찬성의원(231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군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진 화 고 흥 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룬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정 권 김 종 룬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숙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해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계 룬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선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종률
유기홍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용래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병호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임인배	서병렬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신병환	신기남	송영선	신계륜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신국환	심재엽	신상진	신학용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문현	안명옥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승희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이계안	이낙연	이광철	이군현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이근식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한광원	한선교	한화갑	허천형	이상열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기권의원(1인)

김정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32인)

찬성의원(23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문수	김병호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전여옥 정덕구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청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特別消費稅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33인)

찬성의원(187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구논회 권선택
 권영세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희찬 단병호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세환
 박영선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안병엽 안영근 안택수 양승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창
 이종걸 이진구 임인배 임종석

반대의원(41인)

권경석 김광원 김기현 김병호
 김애실 김용갑 김재경 김재원
 김정권 김정부 김희정 나경원
 박성범 박승환 박재완 박찬숙
 박형준 송영선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홍준 엄호성
 유기준 유승민 이계경 이계진
 이승희 이종구 이주호 이한구
 이혜훈 정갑윤 정문헌 정형근
 주호영 진수희 최경환 최구식
 최병국

기권의원(5인)

김형오 박근혜 전재희 정화원
 정희수

○交通稅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37인)

찬성의원(18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진화 고흥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김교홍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희찬
 단병호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영선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안경률	안병엽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안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창	이종걸
이주호	이진구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전재희	정덕구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반대의원(46인)

고조홍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덕룡	김병호	김애실
김용갑	김재경	김재원	김정권
김정부	김종인	나경원	박근혜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찬숙	박형준	송영선	신상진
심재철	안명옥	엄호성	유기준
유승민	이계경	이계진	이승희
이종구	이한구	이혜훈	장윤석
전여옥	정문헌	정형근	주호영
진수희	최경환	최구식	최병국

허천 허태열

기권의원(5인)

김형오 안상수 정갑윤 정화원
정희수

○教育稅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35인)

찬성의원(20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병두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성범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진	박승환	박영선	박종근
배일도	박찬석	박희태	배기선
서병수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선병렬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신국환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심상정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안상수	심재엽	안경률	안병엽
양승조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우윤근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원희룡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인태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윤원호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이경제	이강두	이계안	이경숙
이군현	이계진	이낙연	이광철
이방호	이근식	이병석	이미경
이성구	이시종	이상배	이상열
이용희	이원영	이영순	이영호
이인기	이인영	이윤성	이은영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재창
			이진구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임 태 회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정 덕 구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정 회 수 제 종 길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병 도 한 선 교
 한 화 갑 허 천 국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반대의원(28인)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명 주 김 재 경
 김 정 부 김 종 인 나 경 원 박 근 혜
 박 세 환 박 재 완 박 찬 숙 박 형 준
 송 영 선 심 재 철 안 명 옥 엄 호 성
 유 기 준 유 승 민 이 계 경 이 명 규
 이 승 희 이 한 구 이 혜 훈 정 문 현
 정 진 석 정 형 근 주 호 영 최 경 환

기권의원(6인)

김 형 오 이 상 득 전 여 옥 정 갑 윤
 정 화 원 한 광 원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의원(222인)

찬성의원(218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권 김 정 부
 김 종 룡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회 정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회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계 룬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룬 안 명 옥 안 병 엽 안 상 수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업 호 성
 엄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열 이 성 구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호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중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향 숙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문 현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정 희 수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수 희
 진 영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현 애 자 홍 문 표 홍 재 형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의원(1인)

최 연 희

기권의원(3인)

안 영 근 이 영 순 장 윤 석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

투표의원(223인)

찬성의원(22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병엽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열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창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대열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의원(2인)

서병수 심재엽

기권의원(1인)

박근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

투표의원(224인)

찬성의원(22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김명자	김명주	김김무성	김김문수
안병엽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김병호	김부겸	김김석준	김김선미
양승조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김성곤	김성조	김김애실	김김양수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김영주	김영춘	김김용갑	김김원웅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김재경	김재원	김김재윤	김김재홍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김정권	김정부	김김종률	김김종인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김춘진	김충환	김김태년	김김태환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김학송	김혁규	김김현미	김김형주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김희정	나경원	남김경필	노김영민
이균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노응래	노현송	노김회찬	단김병호
이미경	이방호	이상득	이상열	맹형규	문병호	문김석호	문김학진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문희상	민병두	박김근혜	박김기춘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박명광	박병석	박박상돈	박박성범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창	박세환	박재완	박박진	박박찬석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이화영	박찬숙	박형준	박박희태	배김기선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백원우	변재일	서김갑원	서김상기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서재관	서혜석	선김병렬	손김봉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송영선	신계륜	신김국환	신김남철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안경률	안명옥	안병엽	안상수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한선교	허천형	허태열	현애자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홍문표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이병석	이상득	이상열	이성구
황진하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반대의원(2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박형준	서병수			이인기	이인영	이재창	이주호
기권의원(1인)				이진구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정화원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

○地方財政法改正法律案

투표의원(222인)

찬성의원(21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창선 황진하

반대의원(1인)

서병수

기권의원(2인)

박승환 정화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석준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선 김용갑 김재경 김재원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희정
 나경원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박근혜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손봉숙 송영선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욱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엄호성 유기준
 유승민 유승희 유정복 이강두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균현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성구 이승희 이영순 이윤성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인배
 임태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의화 정종복 정진석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조승수 주성영
 진수희 진영 천영세 최구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황우여 황진하

기권의원(5인)

김정권 남경필 원희룡 이광철
 채수찬

○地方交付稅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27인)

찬성의원(112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오을
 김교홍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영주 김영춘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현미 김형주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학용 안병엽
 양승조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항 유선호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근식 이낙연 이미경
 이석현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창 이종걸 이화영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전병헌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최규식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홍재형 홍창선

반대의원(110인)

강기갑 강재섭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권경석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덕룡

○賞勳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의원(226인)

찬성의원(167인)

강기갑 강봉균 강창일 고진화
 구논회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애실
 김양수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광철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주호
이호웅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덕구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승수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반대의원(38인)

고조홍	고홍길	김광원	김기춘
김낙성	김성조	김용갑	김재원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나경원	박희태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엄호성
유승민	이강두	이상득	이성구
이승희	이혜훈	장윤석	전여옥
정갑윤	정종복	조일현	주성영
주호영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황우여	황진하		

기권의원(21인)

강길부	고경화	권경석	김재경
김정권	박성범	송영선	신국환
안명옥	안택수	유기준	유정복
이계진	이방호	이재창	이진구

정진석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최병국			

○새마을금고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25인)

찬성의원(211인)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병엽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득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창	이종걸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의원(13인)

강기갑 김광원 김영선 노회찬
 단병호 박진 심상정 이방호
 이영순 조승수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기권의원(1인)

이경재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병엽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이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창 이종걸 이주호
 이진구 이호웅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덕구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의원(3인)

김기춘 이혜훈 전재희
 고진화 송영선 정화원

기권의원(3인)

고진화 송영선 정화원

○大韓消防共濟會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30인)

찬성의원(224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장향숙 전병헌 정문헌 정의용
 정덕구 정병국 정봉주 정장선
 정성호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정종복 정진석 제종길 조성태
 조승수 주성영 주승용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의원(3인)

김기춘 이혜훈 전재희

기권의원(3인)

고진화 송영선 정화원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14인)

찬성의원(214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선
김영주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병엽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득
이영호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인기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주호	이인영	이재창	이종걸
임인배	임종석	이혜훈	이호웅
임태희	장경수	임종인	임채정
장향숙	장병헌	장복심	장윤석
정덕구	정문헌	정재희	정갑윤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봉주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장선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정형근

조성태	조일현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황우여	황진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투표의원(207인)

찬성의원(207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영선	김영주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병엽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득
이영호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인기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주호	이인영	이재창	이종걸
임인배	임종석	이혜훈	이호웅
임태희	장경수	임종인	임채정
장향숙	장병헌	장복심	장윤석
정덕구	정문헌	정재희	정갑윤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봉주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장선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정형근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명 규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선 병 렬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성 구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계 룬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신 학 용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심 상 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룬
이 인 영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주 호	안 명 옥	안 병 엽	안 상 수	안 택 수
이 진 구	이 혜 훈	이 호 응	임 인 배	안 흥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임 태 희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혜 영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원 희 룡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민
진 병 현	진 재 희	정 갑 윤	정 덕 구	유 승 희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정 문 현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유 정 복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정 진 석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희 수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병 석
조 일 현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이 상 득	이 성 구	이 승 희	이 영 순
진 수 희	진 영	채 수 찬	천 영 세	이 영 호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최 구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창	이 종 결
최 연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호 응	임 인 배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임 종 석	임 채 정	임 태 희	장 경 수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진 병 현
홍 재 형	황 우 여	황 진 하		진 재 희	정 갑 윤	정 문 현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희 수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구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황 우 여	황 진 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11인)

찬성의원(208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구 논 회	권 선 택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원 응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권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종 룬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진 선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회 태	배 기	배 일 도	백 원 우

기권의원(3인)

권 경 석	서 갑 원	이 혜 훈
-------	-------	-------

○請願警察法 一部改正法律案

투표의원(213인)

찬성의원(212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조	김 애 실

김양수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용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병엽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상득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이인영
이재창	이종걸	이주호	이진구
이호웅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주성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황우여	황진하

기권의원(1인)

이혜훈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12인)

찬성의원(209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학용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병엽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안택수
오제세	우상호	우영식	오제세
우제항	원혜영	우제창	우제항
유선호	유승민	유기준	유선호
유인태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윤원호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이경숙	이경재	이강래	이경숙
이계진	이광철	이계안	이계진
이명규	이병석	이성구	이명규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승희
이원영	이윤성	이인영	이윤성
이재창	이종걸	이진구	이종걸
이호웅	임인배	임채정	이호웅
임태희	장경수	장향숙	이혜훈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이혜훈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이혜훈
정의용	정의화	정중복	이혜훈
정진석	정청래	정희수	이혜훈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이혜훈
조승수	조일현	지병문	이혜훈
진수희	진영	천영세	이혜훈
최구식	최병국	최순영	이혜훈
최연희	최인기	최재천	이혜훈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이혜훈
허천	허태열	홍문표	이혜훈
홍미영	홍재형	황진하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장병현
 전여옥 전재희 정문현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주성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황우여
 황진하

반대의원(1인)

송영선

기권의원(2인)

정갑윤 정희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상득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이인영 이재창 이종걸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전병현 전재희
 정갑윤 정문현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황우여 황진하

기권의원(1인)

박재완

○國民體育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의원(207인)

찬성의원(206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애실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體育施設の설치·이용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의원(210인)

찬성의원(209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정 권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종 룰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회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숙
 박 회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해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심 상 정
 심 재 업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상 수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업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승 민 유 승 회
 원 회 룰 유 기 준 유 재 건 유 정 복
 유 시 민 유 인 태 유 호 중 이 강 두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계 경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계 안 이 명 규 이 병 석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이 호 응 임 인 배 임 중 석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북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문 헌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회 수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성 영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회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흥 문 표 흥 미 영 흥 재 형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의원(1인)

임 태 희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투표의원(204인)

찬성의원(170인)

강 기 갑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흥 길
 권 선 택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홍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룰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조
 김 양 수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종 룰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회 선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진
 박 형 준 박 회 태 배 기 선 백 원 우
 서 갑 원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해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계 룰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신 학 용 안 명 옥 안 병 업 안 상 수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우 제 창
 원 혜 영 원 회 룰 유 기 준 유 인 태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시 민 유 원 호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군 현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광 철 이 성 권
 이 명 규 이 병 석 이 성 구 이 영 순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재 창
 이 인 영 이 인 영 이 진 구 이 혜 훈
 이 혜 훈 임 채 정 임 중 석 임 채 정
 장 향 숙 장 갑 윤 장 성 호 장 종 복
 정 성 호 이 계 안 이 광 철 이 성 권
 이 명 규 이 영 호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영 호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이 호 응 임 인 배 임 채 정 장 경 수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회 정 문 헌 정 봉 주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길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회 수 조 일 현
 조 배 숙 조 성 태 조 성 태 지 병 문
 주 성 영 지 병 문 진 수 회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병 국
 최 연 회 최 인 기 최 병 도 최 병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애 자 최 규 식
 현 애 자 최 규 식 최 구 식 최 규 식

최 성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허 천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황우여

반대의원(31인)

김 광 원 김 석 준 김 애 실 김 재 원
 김 정 부 김 태 환 김 희 정 나 경 원
 노 회 찬 박 근 혜 박 성 범 박 승 환
 박 찬 숙 배 일 도 서 병 수 심 상 정
 심 재 업 안 경 릉 엄 호 성 이 계 경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영 순 정 갑 윤
 정 종 복 조 승 수 주 호 영 진 영
 천 영 세 최 순 영 현 애 자

기권의원(3인)

김 정 훈 심 재 철 이 계 진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회 룡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중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이 호 응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임 태 희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문 현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희 수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성 영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허 천 열 허 태 열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황 우 여

반대의원(1인)

박 재 완

○中小企業創業支援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05인)

찬성의원(204인)

강 기 갑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흥 길
 권 선 택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홍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종 룡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희 선
 김 희 정 나 경 원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성 범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계 룡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업 심 재 철
 안 경 릉 안 명 옥 안 병 업 안 상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

투표의원(209인)

찬성의원(207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흥 길
 권 선 택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홍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종 룡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희 선
 김 희 정 나 경 원 노 영 민 노 응 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병엽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원혜 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상득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창
 이종걸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종복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황우여

반대의원(1인)

유시민

기권의원(1인)

고경화

투표의원(212인)

찬성의원(211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양수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병엽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원혜
 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시민 유인태 윤원호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경숙
 윤호중 이강두 이계경 이계진
 이경제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상득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원영 이윤성 이인영 이인기
 이재창 이혜훈 이종석 임종인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희 수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성 영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의원(1인)

김 애 실

유 정 복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중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이 호 응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중 인 임 태 희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문 현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희 수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성 영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황 우 여 황 진 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07인)

찬성의원(207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권 선 택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주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부 김 종 룰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희 선 김 희 정 나 경 원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계 룬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병 엽
 안 상 수 안 택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

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04인)

찬성의원(203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부 김 정 훈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희 선 김 희 정
 나 경 원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상 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숙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김애실	김양수	김영선	김영주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김영춘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홍준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노용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원희룡	유기준	유승희	유시민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박진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낙연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이명규	이병석	이상득	이성구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손봉숙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이인영	이재창	이종걸	이주호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이진구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안병엽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임종석	임종인	임태희	장경수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봉주	원희룡	유기준	유승희	유시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정형근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이광철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주성영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이병석	이상득	이성구	이성권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이인영	이재창	이종걸	이주호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허천	이진구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임종석	임종인	임태희	장경수
홍재형	황우여	황진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기권의원(1인)

장복심

○2005년도입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의원(200인)

찬성의원(200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용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병엽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상득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창	이종걸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정식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황우여	황진하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투표의원(205인)

찬성의원(205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민병두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희태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해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병엽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창	이종걸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석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황우여
황진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비준동의안

투표의원(179인)

찬성의원(141인)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고조홍
고홍길	권경석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양수	김영주	김재경	김재원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나경원	노영민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박근혜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승민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재
이계안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재창

이종걸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인배 임태희 장경수 장윤석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호영
 진영 채수찬 최구식 최병국
 최인기 최철국 한광원 허천선
 허태열 홍문표 홍재형 홍창선
 황진하

반대의원(27인)

강기갑 고진화 김낙성 김영선
 김원웅 김재윤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희정 노회찬 단병호
 박찬석 배일도 심상정 이광철
 이영순 이호웅 임종인 장복심
 정청래 조승수 지병문 천영세
 최순영 최재천 현애자

기권의원(11인)

구노회 김교홍 김애실 김정권
 김현미 민병두 이계진 임종석
 장향숙 최성 황우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기 문병명 문계석 문근혜
 박기춘 박명세 박병순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배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신병렬 서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계륜 신용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안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계진 이광철
 이계경 이계안 이근식 이기우
 이균현 이규택 이목희 이미경
 이낙연 이병석 이상열 이상득
 이방호 이상배 이승희 이시종
 이성구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영순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윤성 이재오 이재창
 이인제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정일 이한구 이혜훈
 이진구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이호웅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임종인 임영달 장윤석 장향숙
 장복심 장영옥 장재희 정갑윤
 전병헌 전여옥 정두언 정문헌
 정덕구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정병국 정봉주 정장선 정종복
 정의용 정의화 정형근 정화원
 정진석 정청래 조경태 조배숙
 정희수 조성성 조승용 주호영
 조성래 조주성 주영희 주채규
 지병문 진최주진 최영희 최규

○出席議員(289人)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광성문 구노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홍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희찬 단병호 류근찬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請暇議員(8人)

김근태 김기석 김진표 윤건영
 이광재 이해찬 정몽준 천정배

○出席國務委員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

○出席政府委員

외교통상부차관 이태식
 법무부차관 김상희
 국방부차관 황규식
 국가보훈처차장 김정복

○國家人權委員會參席者

상임위원 정강자

○國民苦衷處理委員會參席者

위원장 송철호

【報告事項】

○特別委員長 選任

헌법재판소재판관(조대현)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6월27일)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배

(6월28일)

○特別委員 選任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린우리당

강길부(정) 강봉균(재) 김교홍(산)

김영주(환) 김영춘(정) 김우남(농)

문석호(재) 박찬석(국) 변재일(과)

서갑원(산) 선병렬(산) 안민석(문)

양형일(행) 이계안(재) 이광철(문)

이목희(환) 이영호(농) 이은영(법)

이인영(교) 장향숙(보) 정장선(건)

조경태(건) 조일현(농) 최성(통)
 한나라당

고흥길(행) 권경석(국) 김성조(법)

김재원(농) 김정부(재) 박승환(농)

신상진(환) 심재엽(과) 안경률(산)

안상수(건) 이계경(정) 이재창(행)

이종구(재) 이진구(정) 이해훈(재)

전재희(보) 정두언(환) 주성영(법)

주호영(법) 최구식(문) 최병국(통)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김낙성(농) 김효석(재) 노회찬(법)

이상열(산) 조승수(산)

(6월23일)

헌법재판소재판관(조대현)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양승조 이경숙 이상경 장향숙

정성호 한광원

한나라당

김영선 김성조 김재경 박찬숙

장윤석 주성영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이상열

(6월23일)

○幹事 選任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헌법재판소재판관(조대현)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양승조	열린우리당
	장윤석	한나라당

(6월27일)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특별	김춘진	열린우리당
	안명옥	한나라당

(6월28일)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예산결산특별	김영춘	열린우리당
	김성조	한나라당

(6월28일)

○常任委員 辭任 및 補任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정보	문희상	신기남	열린우리당

(6월23일)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천정배	법제사법	보건복지	열린우리당
문병호	보건복지	법제사법	

(6월28일)

○特別委員 辭任 및 補任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헌법재판소재판관(조대현)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주성영	박계동	한나라당

(6월28일)

○議案 提出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재웅 의원 대표발의)

(6월23일 이재웅 · 김정부 · 이계진 · 이성권 · 홍준표 · 박계동 · 류근찬 · 심재철 · 박찬숙 · 최구식 · 전재희 의원 발의)

國會法 일부개정법률안(유재건 의원 대표발의)

(6월23일 유재건 · 강혜숙 · 정성호 · 김명자 · 김성곤 · 전병헌 · 이은영 · 신국환 · 한명숙 · 이상경 · 황우여 · 이용희 · 유필우 · 이원영 · 심재덕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24일 국회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國軍捕虜待遇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6월23일 김문수 · 김기춘 · 김애실 · 김영숙 · 김재원 · 김정부 · 박계동 · 박성범 · 박세환 · 박승환 · 배일도 · 송영선 · 엄호성 · 이상배 · 이성권 · 이재오 · 정문헌 · 정의화 · 최구식 · 최병국 · 홍준표 의원 발의)

6월24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國稅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6월23일 김효석 · 김재경 · 박재완 · 신국환 · 이상민 · 이성권 · 이혜훈 · 정두언 · 정봉주 · 최재성 의원 발의)

6월24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승규) 인사청문요청안

(6월24일 대통령 제출)

6월24일 정보위원회에 회부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홍미영 의원 대표발의)

(6월24일 홍미영 · 임종석 · 김낙순 · 이계진 · 우원식 · 장향숙 · 한광원 · 강창일 · 윤원호 · 유재건 · 김덕규 · 서재관 · 김태홍 · 유승희 ·

이계경 · 박기춘 · 최인기 · 신학용 · 이정일 · 이인영 · 이상경 · 김동철 · 노현송 · 문학진 · 이상호 · 최재성 · 정봉주 · 김교홍 · 이광철 · 최규식 · 김재운 · 이호웅 · 이기우 · 김성곤 · 김종률 · 이재오 · 류근찬 · 김광원 · 김양수 · 신중식 · 박계동 · 정병국 · 조정식 · 박성범 · 홍문표 · 이경숙 · 심재덕 · 김낙성 · 노영민 · 김원웅 · 우제창 · 우제항 · 정청래 · 선병렬 · 김춘진 · 황진하 · 조정태 · 김희선 · 임종인 · 주승용 · 김영춘 · 김선미 · 안민석 · 박상돈 · 정문헌 · 이낙연 · 최철국 · 김영주 · 김영숙 · 이해봉 · 안영근 · 이성권 · 장복심 · 정화원 · 윤호중 · 유필우 · 유기홍 · 김명자 · 노웅래 · 한명숙 · 김태년 · 정의화 · 김정훈 · 강기정 · 이재웅 · 김현미 · 김효석 의원 발의)

6월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警察法 일부개정법률안(홍미영 의원 대표발의)

(6월24일 홍미영 · 임종석 · 김낙순 · 우원식 · 장향숙 · 한광원 · 강창일 · 윤원호 · 유재건 · 김덕규 · 이상경 · 서재관 · 김태홍 · 유승희 · 이계경 · 최인기 · 신학용 · 이정일 · 이인영 · 김동철 · 노현송 · 문학진 · 이상호 · 최재성 · 정봉주 · 김교홍 · 이광철 · 최규식 · 박기춘 · 이호웅 · 이기우 · 김재운 · 김성곤 · 김종률 · 이재오 · 류근찬 · 김광원 · 김양수 · 박계동 · 신중식 · 정병국 · 조정식 · 홍문표 · 이경숙 · 심재덕 · 김낙성 · 노영민 · 김원웅 · 우제창 · 우제항 · 정청래 · 선병렬 · 김춘진 · 황진하 · 조정태 · 이인기 · 김희선 · 임종인 · 주승용 · 장복심 · 정화원 · 윤호중 · 유기홍 · 김명자 · 노웅래 · 한명숙 · 정의화 · 김정훈 · 이재웅 · 김현미 의원 발의)

6월27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6·15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 지원 결의안

(6월24일 김효석 · 이영순 · 김성조 · 박기춘 · 배기선 · 한명숙 · 원희룡 · 박명광 · 박형준 · 김재홍 · 안민석 · 정문헌 · 장영달 · 최성 · 유기홍 · 선병렬 · 유선호 · 권영길 · 김희선 의원 발의)

6월24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國會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6월24일 심상정 · 강기갑 · 권영길 · 노희찬 · 단병호 · 이영순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

6월27일 국회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국민연금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월24일 강기정 · 유시민 · 이원영 · 구노회 · 신상진 · 이혜훈 · 장향숙 · 안민석 · 김동철 · 양형일 · 김선미 · 박명광 의원 발의)

6월27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郵便局預金 · 保險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

(6월24일 김석준 · 이성권 ·곽성문 · 정의화 · 이혜훈 · 김영선 · 김정부 · 김정훈 · 정문헌 · 강제섭 의원 발의)

6월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 의원 대표발의)

(6월27일 맹형규 · 엄호성 · 배기선 · 이해봉 · 이윤성 · 박재완 · 신상진 · 배일도 · 이시종 · 신국환 · 김재경 · 장복심 · 김재원 · 심재철 · 윤건영 · 최구식 · 고경화 · 유필우 · 이인기 · 김충환 · 이강두 · 최경환 · 이성권 · 황우여 · 안상수 의원 발의)

6월28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國軍捕虜待遇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

(6월27일 황진하 · 유기준 · 이해봉 · 김용갑 · 김재원 · 정문헌 · 최구식 · 유승민 · 조성태 · 김영선 · 허천 · 이강두 · 이계진 · 신상진 · 심재철 · 이혜훈 · 안상수 · 한선교 · 박재완 의원 발의)

6월2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

(6월27일 황진하 · 나경원 · 강제섭 · 고경화 · 고조홍 · 공성진 · 권경석 · 권철현 · 김광원 · 김기춘 · 김기현 · 김명주 · 김무성 · 김문수 · 김성조 · 김애실 · 김양수 · 김영덕 · 김영숙 · 김용갑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권 · 김정부 · 김충환 · 김학송 · 김형오 · 맹형규 · 박계동 · 박근혜 · 박성범 · 박세환 · 박승환 · 박재완 · 박종근 · 박진 · 박찬숙 · 박창달 · 박희태 · 서병수 · 서상기 · 송영선 · 심재철 · 안상수 · 엄호성 · 유기준 · 유승민 · 윤건영 · 이강두 · 이경재 · 이계경 · 이계진 · 이군현 · 이방호 · 이상배 · 이윤성 · 이인기 · 이재창 · 이주호 · 이진구 · 이해봉 · 이혜훈 · 장윤석 · 전여옥 · 전재희 · 정갑윤 · 정문헌 · 정의화 · 정희수 · 주성영 · 주호영 · 진수희 · 최경환 · 최구식 · 허

천 · 허태열 · 홍문표 · 홍준표 · 황우여 · 심재덕 · 고홍길 · 이규택 · 김태환 · 한선교 · 박순자 · 최병국 · 진영 · 안경률 · 심재엽 · 박형준 · 이재웅 · 이종구 · 이성구 · 이상득 · 김석준 · 정형근 · 유정복 의원 발의)

6월28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6월27일 김우남 · 박세환 · 강창일 · 김명주 · 엄호성 · 김재윤 · 배일도 · 이시종 · 김태년 · 제종길 · 박기춘 · 신국환 · 류근찬 · 이원영 · 김태홍 · 이영호 · 이인기 · 신중식 · 강기정 · 김영덕 · 김낙성 · 안상수 · 조일현 · 이인영 · 서재관 의원 발의)

6월28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윤광웅) 해임건의안

(6월27일 강제섭 의원 등 124인 발의)

6·25전쟁납북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여옥 의원 대표발의)

(6월28일 전여옥 · 황진하 · 박계동 · 김재원 · 박재완 · 유기준 · 박순자 · 진영 · 나경원 · 이강두 · 안상수 · 이윤성 · 엄호성 · 안명옥 · 서병수 · 이인기 · 정종복 · 고경화 · 박찬숙 · 안택수 · 이상득 · 황우여 · 권영세 의원 발의)

국내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 부여에 관한 특별법안(정문헌 의원 대표발의)

(6월28일 정문헌 · 권오을 · 정병국 · 박재완 · 남경필 · 원희룡 · 진수희 · 권영세 · 안홍준 · 황우여 · 박승환 · 정의화 · 허천 의원 발의)

이상 2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납북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6월24일 김문수 · 김기춘 · 김애실 · 김영숙 · 김재원 · 김정부 · 박계동 · 박성범 · 박세환 · 박승환 · 배일도 · 송영선 · 엄호성 · 이상배 · 이성권 · 이재오 · 정문헌 · 정의화 · 최구식 · 최병국 · 홍준표 · 황진하 의원 발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안

(6월28일 정부 제출)

6월29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民法 일부개정법률안

(6월28일 정부 제출)

6월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公認會計士法 일부개정법률안

韓國産業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6월28일 재정경제위원장 제출)

國民體育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6월28일 문화관광위원장 제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

(6월28일 허태열·이해봉·엄호성·이성권·김재경·황우여·이상경·박찬숙·안병엽·최인기·이원영·이시중·배일도·이상배·김춘진·이인기·김재원·지병문·전재희·신중식·유필우·이혜훈·최경환·김영덕·신상진 의원 발의)

6월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서울大學校病院設置法 폐지법률안(구논회 의원 대표발의)

(6월28일 구논회·신기남·이강래·지병문·정봉주·박병석·권선택·유시민·이인영·김태홍·한병도·김희선·백원우·선병렬·김춘진·강기정·주승용·최순영·장영달·현애자·이영순·권영길·천영세·김태년·최재성·조승수·이광철·이미경 의원 발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폐지법률안(구논회 의원 대표발의)

(6월28일 구논회·신기남·이강래·지병문·정봉주·박병석·권선택·유시민·이인영·김태홍·한병도·김희선·백원우·선병렬·김춘진·강기정·주승용·최순영·장영달·현애자·이영순·권영길·천영세·김태년·최재성·조승수·이광철·이미경 의원 발의)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구논회 의원 대표발의)

(6월28일 구논회·신기남·이강래·지병문·정봉주·박병석·권선택·유시민·이인영·김태홍·한병도·김희선·백원우·선병렬·김춘진·강기정·주승용·최순영·장영달·현애자·이영순·권영길·천영세·김태년·최재성·조승수·이광철·이미경 의원 발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구논회 의원 대표발의)

(6월28일 구논회·신기남·이강래·지병문·정봉주·박병석·권선택·유시민·이인영·김태홍·한병도·김희선·백원우·선병렬·김춘진·강기정·주승용·최순영·장영달·

현애자·이영순·권영길·천영세·김태년·최재성·조승수·이광철·이미경 의원 발의)

이상 4건 6월2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가족지원기본법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

(6월28일 장향숙·강혜숙·권선택·김덕규·김선미·김영춘·김태년·김태홍·김현미·노현송·박기춘·배기선·신학용·안병엽·염동연·우제항·유승희·이경숙·이미경·이상경·임종석·정봉주·제종길·조배숙·조일현·한명숙·홍미영·엄호성·이성권 의원 발의)

여성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6월28일 이경숙·우원식·김형주·선병렬·강기정·김태홍·이광철·김태년·윤원호·강혜숙·김동철·한명숙·최규성·한병도·유승희·민병두·이재오·정두연·안민석·홍미영·안상수·권오을·지병문·우상호·이호웅·이미경·김재윤·주승용·장향숙·김재홍·양승조·백원우·정청래·강창일·이인영·김교홍·박기춘·노웅래 의원 발의)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6월28일 이경숙·유시민·강혜숙·노웅래·윤원호·김동철·최규성·한병도·유승희·김형주·민병두·홍미영·안민석·권오을·이광철·정청래·김재홍 의원 발의)

6월29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대안)

(6월28일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산업자원위원장 제출)

農産物品質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農地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文教財團所有農地特別補償法 폐지법률안

農漁村高利債整理法 폐지법률안

農漁村高利債整理法中辨濟義務에관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

(이상 7건 6월28일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6월28일 국방위원장 제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6월28일 정무위원장 제출)

地方交付稅法 일부개정법률안**賞勳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政府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6월29일 행정자치위원장 제출)

치료감호법안(대안)**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特定強力犯罪의處罰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憲法裁判所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 6월29일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議案 審査**刑의失効等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2004년8월10일 우윤근·강혜숙·김낙순·신중식·양형일·염동연·우제항·윤원호·이상경·이원영·이은영·정두언·정성호·주승용·최용규 의원 발의)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최용규 의원 발의)

(2004년9월15일 최용규 의원 외 150인 발의)

刑法中改正法律案(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15일 이원영·김덕규·오제세·유선호·최재천·김원웅·황우여·이시중·정성호·김태홍·홍미영·우윤근·양승조·송영길·이은영·최용규·김태년·김동철·이상락·심재덕·원희룡·엄호성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월17일 정부 제출)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권력형 외압과 불법뒷거래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강재섭 의원 대표발의)

(4월13일 강재섭·천영세·이낙연·김낙성 의원 외 138인 발의)

在外同胞의出入國과法的地位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발의)

(5월17일 홍준표 의원 외 116인 발의)

(이상 6건 수정하여 의결)

치료보호법안(최용규 의원 발의)

(2004년9월15일 최용규 의원 외 150인 발의)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04년9월18일 노회찬·고진화·권영길·김홍일·강기갑·단병호·박계동·배일도·손봉숙·심상정·윤건영·이계경·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犯罪受益隱匿의規制및處罰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2004년9월17일 김정훈·이인기·이군현·이원영·류근찬·김재원·이운성·김재홍·유승민·정문헌·안택수·박승환·노웅래·김석준·박재완·진수희·김태년·김기현·박세환·이근식·이계진·서재관·안상수·황우여·이상득 의원 발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발의)

(2004년9월30일 정성호 의원 외 150인 발의)

憲法裁判所法中改正法律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6일 송영길·조경태·복기왕·정성호·장경수·백원우·정청래·노영민·이은영·김원웅·임종석·김재윤·신기남·한명숙·김현미·안민석·이원영·이종걸·김태홍·최성·김영춘·정세균·유시민·우제창·양형일·유선호·지병문·박찬석·신중식·신학용·강창일·이미경·조정식·이상열 의원 발의)

憲法裁判所法中改正法律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16일 장윤석·권경석·김성조·김재경·나경원·박창달·송영선·이주호·임인배·임태희·진수희 의원 발의)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

(2004년11월9일 정부 제출)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발의)

(6월9일 천정배 의원 외 145인 발의)

불법정치자금등국고환수특별법안(이은영 의원 발의)(2004년9월6일 이은영 의원 외 150인 발의)
(이상 9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5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4월18일 전병헌·고진화·오제세·이상득·안민석·박영선·최인기·양형일·유정복·김재홍·김교홍·강혜숙·박재완·조일현·엄호성·노웅래·노현송·이해봉·문학진·조배숙·안상수·이근식·정병국·최재천·

이원영 · 이혜훈 · 제종길 · 김태년 · 신중식 · 김한길 · 유필우 · 서재관 · 우제창 · 윤호중 의원 발의)

음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월5일 정부 제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4월29일 전병헌 · 신중식 · 정봉주 · 조일현 · 김한길 · 서재관 · 유선호 · 이윤성 · 허태열 · 정성호 · 안상수 · 김태홍 · 이규택 · 정병국 · 황우여 · 김낙순 · 김재경 · 오제세 · 노현송 · 이근식 의원 발의)

國家有功者等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6월8일 정부 제출)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4건 정무위원장 보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

(5월9일 김종률 · 강혜숙 · 고진화 · 김덕규 · 김명자 · 김부겸 · 김양수 · 김영춘 · 김재경 · 김진표 · 김태홍 · 김한길 · 서갑원 · 서재관 · 서혜석 · 안병엽 · 안상수 · 엄호성 · 윤호중 · 이계안 · 이근식 · 이낙연 · 이시종 · 이인기 · 이해봉 · 장경수 의원 발의)

國稅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

(5월9일 김종률 · 강혜숙 · 고진화 · 김덕규 · 김명자 · 김부겸 · 김양수 · 김영춘 · 김재경 · 김진표 · 김태홍 · 김한길 · 서갑원 · 서재관 · 서혜석 · 안병엽 · 안상수 · 엄호성 · 윤호중 · 이계안 · 이근식 · 이낙연 · 이시종 · 이인기 · 이해봉 · 장경수 의원 발의)

特別消費稅法 일부개정법률안

交通稅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5월26일 정부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信託業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4월22일 송영길 · 이상민 · 엄호성 · 윤호중 · 우제창 · 조정식 · 김교홍 · 김태년 · 강길부 · 이호웅 · 오제세 · 김현미 · 정성호 의원 발의)

證券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4월27일 신학용 · 박재완 · 서갑원 · 오영식 · 이상민 · 이호웅 · 김부겸 · 이근식 · 선병렬 · 제종길 · 이시종 · 엄호성 · 이명규 · 서혜석 · 박찬석 · 이목희 · 노영민 · 이화영 · 원혜영 · 주승용 · 장경수 · 이혜훈 · 신국환 의원 발의)

先物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4월27일 신학용 · 박재완 · 서갑원 · 오영식 · 이상민 · 이호웅 · 김부겸 · 이근식 · 선병렬 · 제종길 · 이시종 · 엄호성 · 이명규 · 서혜석 · 박찬석 · 이목희 · 노영민 · 이화영 · 원혜영 · 주승용 · 장경수 이혜훈 · 신국환 의원 발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4월27일 신학용 · 박재완 · 서갑원 · 오영식 · 이상민 · 이호웅 · 김부겸 · 이근식 · 선병렬 · 제종길 · 이시종 · 엄호성 · 이명규 · 서혜석 · 박찬석 · 이목희 · 노영민 · 이화영 · 원혜영 · 주승용 · 장경수 · 이혜훈 · 신국환 의원 발의)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계안 의원 대표발의)

(5월23일 이계안 · 박영선 · 김현미 · 이근식 · 염동연 · 김기석 · 전병헌 · 이목희 · 조일현 · 송영길 · 이상경 · 문학진 · 김영춘 의원 발의)

交通稅法 일부개정법률안

所得稅法 일부개정법률안

相續稅및贈與稅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5월26일 정부 제출)

(이상 8건 수정하여 의결)

特別消費稅法 一部改正法律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3월25일 우원식 · 김영주 · 노영민 · 노웅래 · 단병호 · 배일도 · 송영길 · 우제창 · 이목희 · 정두언 · 조정식 의원 발의)

交通稅法 一部改正法律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3월25일 우원식 · 김영주 · 노영민 · 노웅래 · 단병호 · 배일도 · 송영길 · 우제창 · 이목희 · 정두언 · 조정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

韓國産業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

(5월19일 유승민 · 이해봉 · 엄호성 · 전여옥 · 김충환 · 김재경 · 박재완 · 이계경 · 허태열 · 최경환 · 김재원 · 이주호 · 이혜훈 · 유정복 · 배일도 · 신국환 · 김애실 · 이승희 · 최구식 · 이재창 · 나경원 · 이한구 의원 발의)

韓國産業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김정부 의원 대표발의)

(5월26일 김정부 · 강길부 · 고조홍 · 권경석 · 김낙성 · 김재경 · 김재원 · 박계동 · 박병석 · 박재완 · 박찬석 · 박찬숙 · 신국환 · 이상경 ·

이성권 · 이시종 · 이종구 · 이해봉 · 정갑윤 · 정두언 · 정성호 · 최용규 의원 발의)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2일 김교홍 · 이규택 · 이철우 · 정장선 · 송영길 · 이근식 · 이상락 · 김원웅 · 오제세 · 박순자 · 장복심 · 황우여 · 김용갑 · 오시덕 · 김양수 · 이운성 · 조배숙 · 신국환 · 최규성 · 한병도 · 김기현 · 장향숙 · 김태년 · 신학용 · 문병호 · 유필우 · 정두언 · 조승수 · 이원영 · 한광원 · 이호웅 · 최철국 · 서갑원 · 김태홍 · 우제창 의원 발의)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김정부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4일 김정부 ·곽성문 · 김재원 · 박순자 · 박재완 · 박종근 · 심재엽 · 엄호성 · 유정복 · 이근식 · 이재오 · 이해봉 · 이해훈 · 허천 · 허태열 의원 발의)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
(5월26일 정부 제출)

(이상 5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9건 재정경제위원장 보고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가입동의안
(5월11일 정부 제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6월9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보고

군인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04년6월16일 김기현 · 진수희 · 염동연 · 남경필 · 김명주 · 이해훈 · 박형준 · 황우여 · 정문헌 · 고경화 · 정갑윤 의원 발의)

군인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9일 문병호 · 강창일 · 이인영 · 정성호 · 최재천 · 한광원 · 유선호 · 신학용 · 장향숙 · 강기정 · 김교홍 · 김춘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국방위원장 보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현송 의원 대표발의)

(4월14일 노현송 · 강창일 · 강혜숙 · 구논회 ·

김명자 · 김성곤 · 김재경 · 김재홍 · 문학진 · 박기춘 · 박상돈 · 박재완 · 서재관 · 신기남 · 신중식 · 심재덕 · 양형일 · 엄호성 · 오제세 · 우원식 · 우제창 · 우제항 · 원혜영 · 유인태 · 유필우 · 이계경 · 이낙연 · 이시종 · 이원영 · 이운성 · 전병헌 · 정청래 · 조성래 · 조일현 · 최규식 · 홍미영 의원 발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4월25일 박기춘 · 이인기 · 최규식 · 서재관 · 제종길 · 노현송 · 조성래 · 원혜영 · 강창일 · 안병엽 · 우제항 · 우제창 · 양형일 · 정의용 · 심재덕 의원 발의)

大韓消防共濟會法中改正法律案

(2004년10월29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

地方財政法改正法律案

(이상 3건 2004년12월1일 정부 제출)

새마을금고法 일부개정법률안

(4월27일 정부 제출)

請願警察法 一部改正法律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3월31일 강창일 · 강봉균 · 김우남 · 김재경 · 김재운 · 김재홍 · 김종률 · 김태홍 · 김혁규 · 김희정 · 노현송 · 박계동 · 박기춘 · 박세환 · 신중식 · 양형일 · 유정복 · 이계안 · 이호웅 · 최인기 · 최철국 · 허천 의원 발의)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22일 최재성 · 백원우 · 이원영 · 이용희 · 임종석 · 지병문 · 유기홍 · 구논회 · 장향숙 · 박기춘 · 우제항 의원 발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현송 의원 대표발의)

(4월14일 노현송 · 강창일 · 강혜숙 · 구논회 · 김명자 · 김성곤 · 김재경 · 김재홍 · 문학진 · 박기춘 · 박상돈 · 박재완 · 서재관 · 신기남 · 신중식 · 심재덕 · 양형일 · 엄호성 · 오제세 · 우원식 · 우제창 · 우제항 · 원혜영 · 유인태 · 유필우 · 이계경 · 이낙연 · 이시종 · 이원영 · 이운성 · 전병헌 · 정청래 · 조성래 · 조일현 · 최규식 · 홍미영 의원 발의)

(이상 7건 수정하여 의결)

賞勳法中改正法律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2004년8월26일 박찬숙 · 안택수 · 심재철 · 윤

건영 · 이군현 · 정종복 · 유승민 · 이인기 · 김영숙 · 노웅래 · 노현송 · 이상득 · 심재덕 · 박세환 · 김영선 · 김재원 · 엄호성 · 김기현 · 정병국 · 황우여 · 서재관 · 이경재 의원 발의)

賞勳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

(4월27일 최규식 · 강창일 · 장복심 · 서재관 · 양형일 · 민병두 · 김태홍 · 김희선 · 박기춘 · 홍미영 · 지병문 · 조성래 · 노현송 · 윤원호 · 권선택 의원 발의)

賞勳法 일부개정법률안(노현송 의원 대표발의)

(5월16일 노현송 · 배일도 · 이상경 · 박기춘 · 정성호 · 우제창 · 김태년 · 신기남 · 양형일 · 유인태 · 최재천 · 김태홍 · 안상수 · 조경태 · 고진화 · 서재관 · 최성 · 엄호성 · 노웅래 · 고조홍 · 황우여 · 홍미영 · 장기정 의원 발의)

(이상 3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3건 행정자치위원장 보고

國民體育振興法 一部改正法律案(강성중 의원 대표 발의)

(3월31일 강성중 · 홍창선 · 서혜석 · 한병도 · 신중식 · 오제세 · 안상수 · 이근식 · 우제창 · 양형일 · 김기석 · 김석준 · 이성권 · 유승희 · 조배숙 · 송영길 · 제종길 의원 발의)

國民體育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

(4월27일 정부 제출)

體育施設의설치 · 이용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30일 안민석 · 이미경 · 강혜숙 · 김재윤 · 김재홍 · 노웅래 · 민병두 · 우상호 · 윤원호 · 이정숙 · 이광철 · 정청래 의원 발의)

體育施設의설치 · 이용에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강성중 의원 대표발의)

(3월31일 강성중 · 홍창선 · 서혜석 · 한병도 · 신중식 · 오제세 · 안상수 · 이근식 · 우제창 · 양형일 · 안병엽 · 김기석 · 김석준 · 이성권 · 유승희 · 조배숙 · 송영길 · 제종길 의원 발의)

(이상 4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건 문화관광위원장 보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서갑원 의원 발의)

(2004년11월12일 서갑원 의원 외 150인 발의)

中小企業創業支援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6월2일 김태년 · 김교홍 · 김용갑 · 김태홍 · 김형주 · 문학진 · 박순자 · 배기선 · 안경률 · 오영식 · 유기홍 · 이광재 · 이광철 · 이미경 · 이영호 · 이원영 · 장경수 · 정봉주 · 최규성 · 최재성 · 한병도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류근찬 의원 대표발의)

(2004년8월18일 류근찬 · 이규택 · 김영덕 · 이승희 · 최인기 · 이재웅 · 김기현 · 이근식 · 장경수 · 우제창 · 배일도 · 서재관 · 김낙성 · 이인기 의원 발의)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04년8월23일 정병국 · 이원영 · 김영춘 · 김성곤 · 이경재 · 배일도 · 최인기 · 유정복 · 김석준 · 이인기 · 이해봉 · 김재원 · 이근식 · 염동연 · 황우여 · 진수희 · 유승민 · 정종복 · 정문헌 · 윤원호 · 허태열 · 제종길 · 이재오 · 김기현 의원 발의)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3일 우윤근 · 김용갑 · 박재완 · 염동연 · 오영식 · 이상경 · 이상열 · 이영호 · 정성호 · 주승용 · 한병도 · 최순영 의원 발의)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16일 이낙연 · 강길부 · 김광원 · 김홍일 · 김효석 · 박성범 · 손봉숙 · 안경률 · 이상열 · 이승희 · 이정일 · 정종복 · 지병문 · 최인기 · 최재천 · 한화갑 의원 발의)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3월18일 김기현 · 서병수 · 최병국 · 정갑윤 · 안홍준 · 이계경 · 정몽준 · 안경률 · 조승수 · 정병국 의원 발의)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3월24일 정부 제출)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一部改正法律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

(2월28일 안경률 · 박재완 · 김용갑 · 이규택 · 맹형규 의원 외 7인 발의)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

(6월2일 서갑원 · 김선미 · 김현미 · 김동철 ·

홍미영 · 이화영 · 한병도 · 신중식 · 김태년 · 배기선 · 김우남 · 김종률 · 서혜석 · 김재홍 · 송영길 · 이광재 · 민병두 · 선병렬 · 김재윤 의원 발의)

(이상 8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0건 산업자원위원장 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주 의원 대표발의)

(6월3일 김형주 · 제종길 · 조정식 · 우원식 · 배일도 · 문학진 · 전병헌 · 이해봉 · 정봉주 · 구논회 · 노현송 · 최철국 · 최성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4월21일 안명옥 · 김재경 · 이윤성 · 권오을 · 이해봉 · 고진화 · 전여옥 · 고경화 · 박재완 · 김애실 · 맹형규 · 조경태 · 최재성 · 정병국 · 문학진 · 유승민 · 신중식 · 서혜석 · 엄호성 · 임태희 · 배일도 · 이인기 · 유정복 · 이계진 · 이주호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여성위원장 보고

2005년도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월8일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議案 撤回

6·25전쟁납북자 명예회복및지원에관한법률안(전여옥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17일 전여옥 · 엄호성 · 이강두 · 이인기 · 진영 · 유기준 · 정종복 · 나경원 · 박찬숙 · 황진하 · 황우여 · 박계동 · 권영세 · 안택수 · 이윤성 · 이상득 · 안상수 · 서병수 · 고경화 · 박재완 · 김재원 · 박순자 · 안명옥 의원 발의)

6월23일 발의자 철회 요구, 6월27일 철회
귀환납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병국 의원 대표발의)

(5월13일 최병국 · 박성범 · 황우여 · 안경률 · 이계진 · 권경석 · 정갑윤 · 류근찬 · 진영 · 이인기 · 엄호성 · 권영세 · 박세환 의원 발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진화 의

원 대표발의)

(6월18일 고진화 · 김재원 · 김종률 · 신기남 · 이인기 · 이재용 · 이해봉 · 배일도 · 박계동 · 권선택 · 신상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24일 발의자 철회 요구

○請願 提出

국도46호선 배후령구간(신북~북산) 국도개량공사 조기완공에 관한 청원

(2005년6월15일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하리 3405 양구군의회 의원 이한웅 외 6인으로부터 박세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6월17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통합금융감독기구법 제정에 관한 청원

(2005년6월16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 경실련회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개혁위원장 남주하 외 3인으로부터 이상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

6월17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한약사 국가고시 응시자격 부여에 관한 청원

(2005년6월17일 전남 신안군 비금면 용소리 100-3 정현일 외 136인으로부터 이상열 의원의 소개로 제출)

6월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05년6월20일 서울 종로구 당주동 145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성철 외 7만 617인으로부터 배일도 의원의 소개로 제출)

6월22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에 관한 청원

(2005년6월20일 서울 종로구 당주동 145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성철 외 7만 617인으로부터 배일도 의원의 소개로 제출)

6월22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05년6월20일 서울 종로구 당주동 145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성철 외 7만 617인으로부터 배일도 의원의 소개로 제출)

6월22일 정보위원회에 회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2005년6월20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으로부터 이상민 · 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

6월22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행정자치부의 영양교사 배치기준(안) 반대에 관한 청원

(2005년6월20일 서울 동작구 흑석1동 170-15 (사)대한영양사협회 회장 양일선 외 2인으로 부터 정봉주 의원의 소개로 제출)
6월28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請願 審査

KBS속초방송국통·폐합반대에관한청원

(2004년6월25일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69-6 속초시의회의장 최준집 외 38인으로부터 정 문헌 의원의 소개로 제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문화관광위원장 보고

공인회계사법(제40조) 개정에 관한 청원

(2005년2월7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85 -10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서태식으로부터 이계안 의원의 소개로 제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재정경제위원장 보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

(2005년5월23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3 삼 창빌딩 1461호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 장 김문동 외 5002인으로부터 오제세 의원의 소개로 제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산업자원위원장 보고

○要請書 提出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 요청

(6월23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제출)

○書面質問書 提出

쌀재협상에 관한 질문서

(6월22일 강기갑 의원 제출)

국립대병원 주관 행정부처 이관에 관한 질문서(2 건)

(이상 2건 6월29일 신상진 의원 제출)

○書面答辯書 提出

형소법 개정, 사면 등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회계연구원의 회계기준 변경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장관 업무인수인계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기업규제 등에 대한 관한 질문서에 답변서
(이상 4건 6월21일 정부 제출)

행담도 개발사업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6월22일 정부 제출)

유전개발 검찰수사 등에 관한 질문서에 답변서
행담도 개발사업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BTL사업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3건 6월23일 정부 제출)

5·18민주화운동 당시 투입된 군 병력 중 사상자
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
서

비정규직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3건 6월27일 정부 제출)

(이상 11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報告書 提出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 및 농산어
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6월22일 정부 제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제255회 국회(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2005년 7월 6일 오후 2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이 유	헌법재판소재판관(조대현) 선출과 국 가정보원장후보자(김승규) 청문회경과 보고
요 구 자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민주당 이낙연 의원 자유민주연합 김낙성 의원 외 291인

(6월28일)